

학생 통학차량 운영 업무매뉴얼



목 차

I. 매뉴얼 개요

- 매뉴얼 발간 목적 1
- 매뉴얼 발간 배경 1

II. 경기도교육청 학생 통학차량 지원 방향

- 학생 통학차량 정의 3
- 학생 통학차량 지원 배경(필요성) 3
- 2024년 경기도교육청 학생 통학차량 지원 사업 4

III. 학생 통학차량의 이해

- 학생 통학차량 종류 8
- 학생 통학차량 공통 적용사항 9
- 학생 통학차량 용역수급인(전세버스) 의무 11
- 직영차량(학교소속차량) 운영 세부사항 1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세부사항 18

IV. 학생 통학차량 임차계약

□ 기초금액 및 계약방법 결정	25
□ 계약심사	26
□ 입찰공고	32
□ 2인 이상 견적 제출	45
□ 수의시담	73
□ 개찰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	74
□ 계약 체결	92

V. 계약 이행

□ 선금	96
□ 보험료 사후정산	97

VI. 학생 통학차량 안전

□ 운전자 안전수칙	99
□ 탑승자(학생) 안전수칙	107
□ 동승보호자 안전수칙	107

VII. 부록 - 각종 서식

□ 학생 통학차량 등·하교 이용학생 명단	111
□ 학생 통학차량 운행 확인서	112
□ 학생 통학차량 운행일지	113
□ 학생 통학차량 일일 자체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114
□ 학생 통학차량 월 자체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115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116
□ 차량 정수배정 신청서	117
□ 차량 등록 또는 말소 등록 보고서	118
□ 차량 교체승인 신청서	119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서	120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122
□ 공용차량 관리대장	124
□ 유류 수불대장	125
□ 차량 정비대장	126
□ 운전원 근무수칙	127
□ 동승보호자 근무수칙	128

I. 매뉴얼 개요



매뉴얼 개요

□ 매뉴얼 발간 목적

- 학생 통학차량의 효율적인 계약 체결과 안전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준, 자료 등 제공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등(이하 ‘단위학교’)의 학교급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학생 통학차량 운영 모델 제언
-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에 학생 통학차량 운영 활성화 및 업무 편의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복잡한 학생 통학차량 임차계약 업무(원가계산, 계약심사, 입찰 등)를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여 학교 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기여

□ 매뉴얼 발간 배경

- 학생 통학차량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지속적인 증가
- 학생 통학차량 안전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도로교통법」 내용 등에 대한 홍보 필요
- 사업별 분산되어 있던 학생 통학차량 업무 통합 운영(2023년 3월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넓은 통학구역 설정으로 인한 통학차량 운영 학교 증가
- 학생 통학차량의 업무 진행 절차와 학생 통학차량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배부

II. 경기도교육청 학생 통학차량 지원 방향

II 경기도교육청 학생 통학차량 지원 방향

□ 학생 통학차량 정의

- 근거: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 개념: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다음 차량을 말함
 - ◆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통학택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한정면허 대상으로 선정한 자동차
 - ◆ 기타 관계 법령과 조례 등에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자동차

◆ “통학”이란?

- 학생의 등·하교 외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것도 광의의 개념에 포함되나,
-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서는 전통적 개념인 ‘학생이 학교에 가거나 학교에서 돌아오는 것(등·하교)’으로 한정하고 있음

□ 학생 통학차량 지원 배경(필요성)

- (원거리 통학)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설립 어려움과 소규모 주택건설 개발 사업에 따른 넓은 통학구역 설정 등 원거리 통학 학생 다수 발생
 - ◆ (유치원) 통학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원거리 통학 유아수 증가
 - ◆ (초등학교) 농촌 지역, 공공 택지 개발이 없는 지역 등의 넓은 통학구역 발생
 - ◆ (중학교)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배정으로 일부 지역 원거리 통학 발생
 - ◆ (고등학교) 학생 선택에 의해 진학이 이루어지며, 학교 소재 해당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등 원거리 통학 발생
- (통학로 안전) 보·차도 취약 구간 발생 및 교통안전 시설물 미비에 따른 통학 안전 문제 발생
 - ◆ 도심, 난개발, 사유지 점유 등에 따른 보·차도 미분리 발생
 - ◆ 안전시설물은 관리주체(지자체 및 경찰서)가 달라 개선에 대한 시간 필요

- (환경 변화) 관련 법령 개정 등 통학차량 지원 요구 확대
 -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통학지원 규정 신설(2020년),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2021.5월)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등
 - (수요증가) 통학차량을 특혜가 아닌 보편 복지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로 통학차량 지원 요구에 대한 수요 급증

□ 2024년 경기도교육청 학생 통학차량 지원 사업

-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사업
 - 지원대상 및 기준

구분	평가 기준 및 고려 사항	비고
지원 대상	○ 경기도 관내 초·중학교 재학생 ○ 학생 등·하교 차량에 한하여 지원	
지원기준	○ 통학거리 - (초등학교) 학교와 거주지 기준 통학거리 1.5km 이상 - (중학교) 등·하교 시간 기준 대중교통 이용 30분 이상 ○ 통학환경 - (교통취약) 취약한 교통환경으로 학생 다수가 도보·대중교통 통학이 어렵거나, 등·하교 시간 유동인구 집중으로 통학시간 증가(30분 이상) 및 학생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학교 - (통학안전) 보·차도 미분리, 안전시설물 설치 취약 등 통학 안전 개선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학교 - (재난지역) 재난 발생 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개교지연 등 - (임시배치교) 신설학교 개교 지연에 따른 임시배치교 중 학생 다수가 취약한 통학환경으로 도보·대중교통 통학이 어려운 경우 (위 통학거리 및 환경 기준 준용) - (통·폐합교)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에 의해 통·폐합된 학교는 통학거리 및 환경 기준 예외 적용	
기타	○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차량 지원 필요성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제외) 이사 후 미전학, 부모 직장 인근 등교, 사립초 및 특성화중 등 자의에 의한 선택으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은 지원 제외

- 고등학교는 평준화지역의 경우 추첨에 의한 배정학교에 따라 통학 거리의 차이가 있으며, 비평준화지역의 경우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원거리가 다수 발생
- 고등학교는 통학거리, 시간, 안전 등 지원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지원방법
 - (임차운영비 지원) 차량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과 인력 채용 등 인건비 증가 요인이 없는 임차운영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금액) 지역별, 노선별 필요 금액이 상이하여 학교에서 임차 운영에 필요한 실비 기준 지원(단, 교육청에서 적정 금액 여부 검토)
 - (소요재원)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자체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지원(대응투자 필수)

- ※ 지자체 협력 요인(지자체의 책무)
 - 교육청과 협의 없는 소규모 주택개발사업(300세대 미만)으로 넓은 통학구역 및 원거리 통학 학생 발생
 -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도보 여건 및 대중교통 노선 개선 등 지자체 통학여건 개선 책임
 -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및 시·군 「어린이 통학로 안전 관리를 위한 조례」 등에 따른 지자체의 통학여건 개선 및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에 대한 관리 책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 지원 의무

- 지원절차

학생통학지원 수요조사 알림	사업신청※ (학교운영위원회)	현장 확인 및 우선순위 결정 (지자체 협의)	안전 상정	안전심의 및 최종대상선정	결과통보 및 예산교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통학지원심의회)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통학지원 심의위원회 (도교육청)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 사업 신청 시 학교구성원 의견 반드시 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수(조례 제9조)

○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사업

◆ 지원대상 및 기준

구분	평가 기준 및 고려 사항	비고
지원 대상	○ 경기도 관내 공립 단설 및 병설 유치원(사립유치원 제외) ○ 학생 등·하교 차량에 한하여 지원	
지원기준	○ 통학환경 - (원거리) 원거리 통학생이 많은 유치원 - (통학안전) 보·차도 미분리, 안전시설물 설치 취약 등 현장 실사 결과 안전한 통학 확보가 필요한 유치원 ○ 운영여건 - (신규개원) 신규 개원이나 매입형 유치원 우선 지원 검토 - (원아모집) 원아모집 상황 악화로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	
기타	○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차량 지원 필요성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방법

- (임차운영비 지원) 차량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과 인력 채용 등 인건비 증가 요인이 없는 임차운영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금액) 지역별, 노선별 필요 금액이 상이하여 학교에서 임차 운영에 필요한 실비 기준 지원(단, 교육청에서 적정 금액 여부 검토)
- (소요재원) 공립유치원의 원활한 원아 모집과 효율적인 학사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전액 지원

◆ 지원절차 ⇒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절차와 동일

○ 특수학교 통학차량 지원 사업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경기도 관내 공·사립 특수학교
- (지원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의무 지원

◆ 지원방법

- (임차운영비 지원) 차량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과 인력 채용 등 인건비 증가 요인이 없는 임차운영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금액) 지역별, 노선별 필요 금액이 상이하여 학교에서 임차 운영에 필요한 실비 기준 지원(단, 교육청에서 적정 금액 여부 검토)
- (소요재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청 전액 지원

Ⅲ. 학생 통학차량의 이해





III 학생 통학차량의 이해

□ 학생 통학차량 종류

○ 통학차량 소유권에 따른 종류

- ◆ 임대차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
 -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외 개인(일명 '지입차') 소유의 차량과 운송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 직영차량(학교소속차량)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 정수배정 후 구입, 관리전환, 기증 등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경기도교육감)가 소유한 자동차

○ 여객대상 연령에 따른 종류

- ◆ 어린이통학버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의거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¹⁾에서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52조 및 제53조, 제53조의3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 어린이통학버스 외 학생 통학차량
 -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학생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 현행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외 대상
 - 학생 통학 안전에 필요한 사항은 어린이통학버스 규정 준용 권고

○ 탑승 인원에 따른 종류

- ◆ 소형: 15인승 이하 / 중형: 16인승 ~ 35인승 / 대형: 36인승 이상

1)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 학생 통학차량 공통 적용사항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 ◆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아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유리창 우측 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
-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분실했거나 낡아서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음

○ 주요 장비

- ◆ 운행기록장치(DTG)²⁾ 설치
 - 「교통안전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학생 통학차량의 위험운전 행동 개선 등 안전관리를 위해 DTG장착 의무
 - 자동차의 속도, 엔진회전수(RPM), 위치(GPS) 등을 통해 위치, 가속도, 주행거리, 시간 등을 자동적, 주기적으로 기억장치에 기록
 -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월별 운행 기록을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
 - 기록된 운행기록 임의 조작 금지
-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구(영아용 보호장구)³⁾
 - 영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 후 좌석안전띠를 착용
 - 영아의 체중 범위에 해당되는 안전인증 검사기준을 선택, 사용하여야 함
 - 안전벨트 종류에 따른 안전인증 검사기준
 - 2점식 벨트: 0+그룹(13kg 미만), I 그룹(9kg ~ 18kg 이하)
 - 3점식 벨트: 0그룹(10kg 미만), 0+그룹(13kg 미만), I 그룹(9kg ~ 18kg 이하)
- ◆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⁴⁾
 -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 학생이 학생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구비

2) DTG(Digital Tacho Graph): 차량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기기. 자동차의 운행관리,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훈련, 운행계통 및 운행경로 개선, 운영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 수립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

3)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구: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시 승차하고 있는 어린이를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그 차량에 붙어있는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자동차의 시트 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장치

4)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각종 유압장치, 구조물을 장착하여 움직임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등이 쉽게 차량에 승하차할 수 있도록 제작된 승강용 리프트 장치





○ 서류 및 물품

◆ 비치 서류

- 학생 통학차량 운행기록
- 학생 통학차량 운행일지
- 학생 통학차량 자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학생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수칙
- 운행노선도 및 시간표
- 승차대상 학생 명단 및 연락처
- 비상연락망
- 어린이통학버스 추가 서류
 -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 이수증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 기타 비치 물품

- 차량용 소화기
- 응급도구함
- 비상용망치
- 금연스티커
- 비상용 전등

□ 학생 통학차량 용역수급인(전세버스) 의무

○ 학생 통학차량 운전자의 의무

- ◆ 학생이 타고 내리는 경우에 한하여 점멸등 장치를 작동해야 하며, 학생을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점멸등 장치를 표시
- ◆ 학생이 통학차량을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학생이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학생 통학차량을 출발해야 함
- ◆ 학생 통학차량 운행을 마친 후 학생이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생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작동하여야 함

○ 학생 통학차량 운영자의 의무

- ◆ 학생을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학생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보호자는 학생이 승차 또는 하차 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학생이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보호자 동승 시 이를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함)를 부착할 수 있으며 보호자 동승표지는 앞면은 반사지, 뒷면은 탈부착이 가능한 고무자석으로 제작해서 학생 통학차량의 우측 옆면 승강구 부근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함
 - 40cm(가로)×15cm(세로), 청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제작



- ◆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확인기록(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학생 통학차량 운영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 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 안전교육 이수 의무

- 학생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보호자는 학생 통학차량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학생 통학차량 안전교육은 다음 구분에 따라 실시
 - 신규 안전교육: 학생 통학차량을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정기 안전교육: 학생 통학차량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학생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사람은 학생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학생 통학차량을 운전하게 하거나 동승하게 하여서는 안 됨

□ 단위학교의 의무

- 통학버스 관리시스템⁵⁾(<https://schoolbus.ssif.or.kr>)에 정보 등록



□ 직영차량(학교소속차량) 운영 세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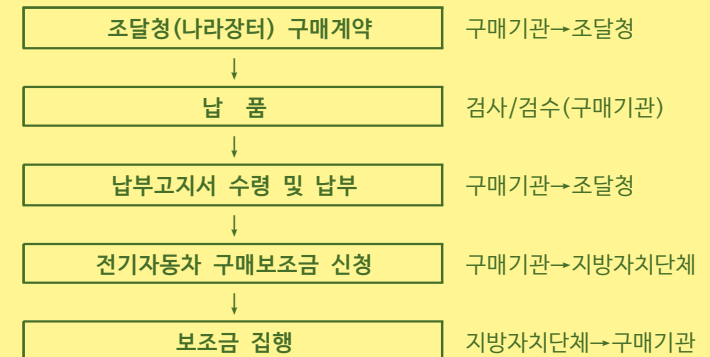
○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자동차 신규 등록 제한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2024. 1. 1.부터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자동차 신규 등록 제한
- 단, 기존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운행된 경유자동차는 차량의 소유자 변경이 없는 한 계속하여 운행 가능
-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 소유로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가 인사이동으로 학교장(원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경유자동차 계속 사용 가능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2023년 기준, 2024년 기준 미확정)

- 개인, 공공기관 등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성능·규모를 고려하여 버스(승합차)의 경우 중형 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어린이통학버스로 구매하는 경우 500만원 추가 지원
- 지자체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으며,
- 지자체 보조금 확보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구매계약 전후 보조금 잔여 현황 수시 확인 필요

•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절차(2023년 기준, 2024년 기준 미확정)



5)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모든 통학차량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수료여부, 법적안전장치 구비 여부, 보험가입 여부,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의 정보 제공



○ 학생 통학차량 취득

- 사전에 정수 배정 후 취득
- 조직의 기능, 업무량, 규모, 관할 행정구역,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 고려
- 취득 방법: 구입, 관리전환, 기증 등
- 학생 통학차량의 신규 취득 절차



- 관련부서 협의의 내용 : 차량 구입·유지 소요예산, 운전원 확보 방안 등
- 학생 통학차량 정수배정 신청서 제출 : 유·초·중·고·특수학교 → 교육장
- 학생 통학차량 정수배정 : 교육장 → 유·초·중·고·특수학교
- 학생 통학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 차량의 정수배정, 임시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차량 교환의 승인을 받은 후 취득
- 학생 통학차량 취득 방법
 - 학교회계 구입(검수 건)
 - 물품관리 > 물품계획및취득관리 > 물품취득관리 > 검수자산정리 대상목록 > 대장반영 > 물품취득대장정리목록 > 대장정리 > 물품 기본정보 확인 및 입력 운용부서, 수량 등록→저장→결재요청
 - 학교회계 구입(미검수 건)
 - 물품관리 > 물품계획및취득관리 > 물품취득관리 > 기타취득물품 등록 > 입력 및 저장(미검수결의번호 연결 필요) > 물품취득대장정리 목록 > 대장정리 > 물품기본정보 확인 및 입력 운용부서, 수량 등록 →저장→결재요청
 - 관리전환
 - 소요조회 인수승인 > 물품관리 > 물품계획및취득관리 > 물품취득관리 > 물품취득대장정리목록 > 대장정리 > 물품기본정보 확인 및 입력 운용부서, 수량 등록→저장→결재요청
 - 기증
 - 학교회계 > 발전기금 > 접수관리 > 기금접수관리 > 접수등록 > 정보 입력(소모품 체크 해제)→저장→확정
 - 물품관리 > 물품계획및취득관리 > 물품취득관리 > 물품취득대장정리목록대장정리 > 물품기본정보 확인 및 입력 운용부서, 수량 등록 →저장→결재요청

○ 학생 통학차량의 등록(말소) 및 교체

- 학생 통학차량의 등록 및 말소
 - 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차량교환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유·초·중·고·특수학교 → 관할 시·군청)
 -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 이용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ecar.go.kr>)
- 학생 통학차량 등록 또는 말소 등록 보고
 - 보고서 제출: 20일 이내(유·초·중·고·특수학교 → 교육장)
 - 등록: 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 말소등록: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첨부
- 학생 통학차량 교체 승인
 - 신규 차량으로 교체 시 승인 필요
 - '차량 교체승인 신청서' 서식 제출(유·초·중·고·특수학교 → 교육장)
 - 차량 교체가 가능한 경우
 -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 사고 파손으로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취득 당시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 확인 필요)
 - 최단운행연한(9년)의 3분의 2 경과 및 최단주행거리(소형 및 중형: 12만 km, 대형: 해당 없음)의 3분의 2 초과한 경우
 -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자동차종합정비업등록자의 검사 확인 필요)
 - 정부시책으로 교육감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절차: 차량교체승인신청서, 차량교체설명서, 증명서류 제출
 - 유·초·중·고·특수학교 → 교육장 (※ 매년 교육청 수요조사 시 제출)

○ 학생 통학차량의 운행관리

- 학생 통학차량의 사용
 - 사적 사용과 업무수행 외 사용 금지
 - 조달청 공공기관 공용차량 유류 공동구매 서비스
 -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조달청과 계약된 주유소 이용(할인요금 적용)
 - 발급절차: 나라장터로그인(조달청계약요청(중앙조달)) > 수요기관업무 > 유류공동구매 > 카드관리 > 카드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유류공동구매카드 발급
 - 이용절차: 제휴 주유소 이용 → 월 2회 카드대금 청구(전용 계좌 자동이체), 조달수수료 반기별 고지서 청구
- 학생 통학차량의 기록·유지
 - 공용차량 관리대장, 유류 수불대장, 차량 정비대장, 차량 운행일지 (단, 전산입력 처리 시 기록·유지를 갈음할 수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인 경우 안전운행기록 작성 및 분기별 교육지원청 보고 또는 통학버스 관리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에 전산 입력 제출

-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 실시주기: 연 2회
 - 점검반
 - 교육지원청 어린이 교육시설별 통학차량 담당
 -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안전담당
 - 경찰서 통학버스 담당
 - 국토부 자동차 검사 담당(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시·도지부)
 - 대상 선정
 -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경찰서에 신고된 통학버스
 - 통학버스 운영 관련 최근 1년 이내 인·허가, 신고 및 등록 시설
 - 운전자·운전자 중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후 2년 내 재교육을 미이수한 시설
 - 전년도 분기별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시설
 - 점검항목
 - 통학버스 신고(「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
 - 통학버스 요건 구비(「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
 -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
 - 운전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행위(「도로교통법」 제51조)

○ 운전원 관리

- ◆ 운전원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차량 정기점검·정비 및 안전 운행
- ◆ 금지사항
 - 근무 중 음주 행위, 운전 중 흡연·식음, 휴대폰 사용 및 불필요한 잡담
 - 대리운전, 제동장치나 비상조치 미조치 후 차량 이탈 행위
 - 공용차 사적 운행, 배차지역 이외 지역 운행 행위, 관계규정 위반 행위
- ◆ 차량운행 중 사고 시 선 안전조치 후 담당 공무원 보고 후 지시에 따름
- ◆ 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 차량 운행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함
-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차량 내부에 안전교육 확인증 비치)
 - 신규 안전교육: 운전 시작 전 의무 수료
 - 정규 안전교육: 2년마다 실시
 - 교육신청(오프라인)
 -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 교통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 동승보호자 관리

- ◆ 동승보호자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학생 승·하차 및 운행 중 안전 관리
- ◆ 금지사항
 - 근무 중 음주 행위, 운전 중 흡연·식음 및 불필요한 잡담
 - 대리탑승, 차량안전을 해하는 행위(폭력, 폭언 등)
 - 탑승 학생 이외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수수 행위
- ◆ 차량운행 중 사고 시 선 안전조치 후 담당 공무원 보고 후 지시에 따름
-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차량 내부에 안전교육 확인증 비치)
 - 신규 안전교육: 동승 시작 전 의무 수료
 - 정규 안전교육: 2년마다 실시
 - 교육신청(온라인)
 - 교통안전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 > 통학버스 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세부사항

○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 차종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하며 그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를 갖추어야 함
- 보험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전액 배상을 위해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보험가입이 완료된 차량
- 소유주
 -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의거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
- 안전
 -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알리는 표시부와 차체에 장착하는 지지부에 정지 표시 장치 및 외측에는 적색 표시등, 내측에는 황색 또는 호박색 표시등을 장착하고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는 좌석안전띠와 하차확인장치, 운행기록장치를 갖춘 자동차이어야 함

○ 어린이통학버스 구조

- 차량 외부 색상 및 표시등
 -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함
 -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 이상, 120회 이하로 점멸되는 2개의 적색 표시등과 2개의 황색 표시등 또는 호박색 표시등 설치
 - 차량 중심선에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적색 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 표시등은 안쪽에 설치
 - 앞면 표시등은 앞면 유리창 위로 앞에서 가능한 높게 하고, 뒷면 표시등의 렌즈 하단부는 뒷면 옆 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의 길이가 같게 설치
 -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cm² 이상이어야 함
 - 도로에 정지하거나 출발할 때에는 황색 표시등 또는 호박색 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며, 정지할 때는 적색 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여야 하되 운전자가 그것을 작동할 수 있어야 함(적색 표시등과 황색 표시등 또는 호박색 표시등 동시 점멸 금지)

- 어린이보호 표지 부착
 -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에 어린이보호 표지 부착
 -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하며, 두께 1mm 이상의 아크릴 재질로 제작
- 정지표시장치
 - 정지표시장치는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알리는 표시부와 이를 차체에 장착하는 지지부로 구성되며, 지지부는 주행 중 정지표시장치가 차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되고, 예리한 돌출부분이나 모서리가 없는 구조일 것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측 옆면 앞부분에 정지표시장치를 설치하고 이 경우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 추가 설치 가능
 - 정지표시장치는 바탕면은 적색, 글자와 테두리는 흰색, 각 모서리의 곡률은 10mm 이상,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
 -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인 중형 승합자동차 및 대형 승합자동차의 정지표시장치 표시부의 규격은 표시부 규격의 125% 또는 150%로 함
 - 정지표시장치는 외부 충격 시 정지표시장치의 지지부 일부가 접혀야 하고, 표시부는 교체를 위한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일 것
 -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차체와 수직인 방향으로 펼쳐질 것
 -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닫힐 때에는 자동으로 차체와 나란한 방향으로 접힐 것
- 후방 확인 장치 및 가시광선 투과율
 - 광각 실외후사경 위치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우
 - 관측봉 전부가 보일 수 있는 영상장치 또는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려거나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의 근접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 안전띠와 승강용 발판
 -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함
 -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제1단의 발판높이는 30cm 이하이고, 제2단 이상의 발판 높이는 20cm 이하일 것(견고하게 설치된 구조의 보조발판 사용 가능)
 - 승하차시 발판이 돌출되도록 하고, 자동 돌출 작동시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각 단의 발판은 표면이 거칠거나 미끄럽지 않게 마감 처리 되어야 함
- 최고속도 제한 장치
 - 어린이통학차량은 최고속도가 110km/h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설치

♦ 하차확인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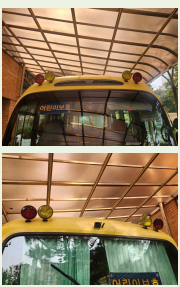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여야 함
-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에서 제거한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착을 포함한다)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이 작동하는 구조
-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이 작동되면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착을 포함한다)을 누르거나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다시 시동하여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 경고음 발생장치는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경보음 또는 음성메시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키고,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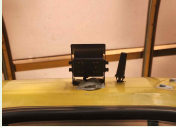
♦ 차량의 구조·장치를 변경할 경우

- 변경된 구조·장치 관련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
- 제출서류
 - 튜닝승인 신청서, 변경 전·후의 자동차 외관도,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 어린이통학버스 구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번호	항목	내용	예시사진
1	색상 (제19조 제8항)	- 색상은 황색이어야 함	
2	어린이 보호표지 (제19조 제9항)	- 앞: 우측 상단(150mm*400mm) 뒤: 중앙 하단(200mm*500mm) - 1mm 이상 아크릴, 청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탈부착형	
3	정지표시장치 (제19조 제10항)	- 기준일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제작·튜닝한 자동차 - 승강구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작동 -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 추가설치 가능	

번호	항목	내용	예시사진
4	좌석 (제25조 제2항)	- 가로·세로 각각 27cm 이상 - 앞좌석등받이 뒷면과 뒷좌석등받이 앞면간 거리 46cm 이상 - 좌석규격: 가로30cm, 세로41.4cm 이상 - 등받이: 71cm 이상(머리지지대 포함) - 좌석간 거리: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 모형 착석 가능	
5	좌석안전띠 (제27조 제6항)	-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어야 함	
6	승강구 (제29조 제1항 제4호)	- 1단: 높이 30cm이하, 가로-승강구 유효 너비 80% 이상, 세로-20cm 이상 - 2단 이상: 높이 20cm 이하(15인승 이하는 25cm 이하 가능)	
7	표시등 (제48조 제4항)	- 안쪽 황색(정지 예정 시 운전자 조작에 의해 점멸 및 출발을 위해 승강구 닫을 시 자동으로 점멸) - 바깥쪽 적색(승강구 열릴 시 자동으로 점멸) - 황색, 적색 동시점멸 금지	
8	간접시계장치 (제50조 제2항, 제3항)	- 좌·우 광각 후사경 설치 - 차체 바로 앞 장애물 확인 가능한 간접시계장치 설치(원동기가 운전석 앞쪽에 위치한 자동차 제외)	

번호	항목	내용	예시사진
9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제53조의2)	- 후방영상장치: 관측영역 조건 존재 (규칙 참고) -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후진 시 경고음 반복 알림(보행자용) -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후방보행자 접근 감지 알림(운전자용)	 
10	하차확인장치 (제53조의4)	- 시동 끄고 3분 이내 경고음(경적) · 표시등(비상등) 작동 - 확인버튼 누름 또는 재시동 시 경고음 등 작동 정지 - 장치보호 목적으로 볼 수 없는 퓨즈 설치, 별도의 OFF스위치 설치, 안전벨 스위치 연동, 대형승합자동차의 메인스위치와 연결 등은 금지 - 경고음은 앞 또는 뒤 2m에서 측정 시 60dB(A) 이상	
11	최고속도 제한장치 (제54조제2항)	- 기준일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제작 · 튜닝한 자동차 - 승합자동차인 경우, 기준일자와 관계없이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 필요	전문 진단장비로 OBD단자에 연결하여 확인 
12	운행기록장치 (제56조)	- 여객사업용 자동차는 시행일과 관계없이 의무 설치 - 설치 및 정상작동여부(전원, 속도, rpm 등) 확인	
13	창유리 썬팅 (제94조 제3항)	-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14	안전 비상벨	- 미처 하차하지 못해 차량에 갇힌 아이들이 누를 수 있도록 설치된 벨	

○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함
-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함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함

IV. 학생 통학차량 계약

IV 학생 통학차량 계약

□ 기초금액 및 계약방법 결정

○ 계약 관련 용어

- 추정가격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정의 및 내용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예정가격 결정 전에 산정된 가격 - 입찰 방법, PQ심사, 적격심사, 수의계약 등의 기준이 되는 가격 - 예산에 반영된 금액 또는 해당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
---------------	---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정의 및 내용	- 예정가격 작성 과정에서 기술·설계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관급자재비 제외) -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
---------------	---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내용	- 입찰공고에서 예정금액으로 사용 - 계약심사, 시공 경험 실적평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
----	--

○ 계약방법 결정

구분		수의계약		입찰	
		1인 견적 제출	2인 이상 견적 제출	제한입찰	일반입찰
용역	추정 가격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방법	단일견적	낙찰하한율 88% *2천만원 이하 90%	적격심사	

- 분할계약 금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분할 불가



□ 계약심사

○ 개념

- 계약심사제도는 효율적인 재정운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 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제도

○ 대상기관

- 경기도교육청 관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사립학교 제외)
- 경기도교육청 관할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사립유치원 제외)

○ 심사대상

원가심사	- 공사: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는 5억원) 이상 - 용역: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 물품: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

○ 계약심사 처리 절차

심사 자료 준비(학교)	심사요청 (학교)	심사 서류 검토 (재무관리과)	심사 실시 (재무관리과)	결과통보 (재무관리과)
계약심사요청서, 원가계산서, 과업지시서 등	학교→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제출서류 확인, 누락 서류 보완	재무관리과와 요청 기관(학교) 협의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 학교

○ 기안문(예시)

0000학년도 ▲▲초 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계약 심사요청	수신: 경기도교육감(재무관리과장)
---------------------------------	--------------------

- 관련: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5조
- 0000학년도 통학차량 임차용역계약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붙임과 같이 요청합니다.

- 붙임 1. 심사요청서 1부.
2. 심사요약서 1부.
3. 원가계산서 1부.
4. 과업지시서 1부. 끝.

용역 원가계산서(예시)

용역명 : 2024학년도 00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 용역

[단위: 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설명	링크	
재료비	유류대	9,383,592	총운행거리×경유단가/연비	경유 단가 한국석유공사 고시가격 적용 ▶오피넷 > 평균판매가격 > 지역별 > 주간 > 기간: 원가 계산산출시점 전주 조회 > 제품: 자동차용경유(경기)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오피넷(Opinet) 홈페이지 https://www.opinet.co.kr	
	소계	9,383,592				
인건비	기본급		80,396,832	시급×연간근무시간	근로기준법 제43조 시급=일급/8시간 중소기업중앙회 제2부문 시중노임 적용 ▶중소기업중앙회 >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 운전원 : 외부특수차운전원 일급 적용 · 승차도우미 : 단순노무종사원 일급 적용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매년 상하반기 조회)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	시급의 50% 가산		근로기준법
		야간근로수당	-	시급의 50% 가산		근로기준법
		휴일근로수당	-	시급의 50% 가산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3,187,656	일급×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12개월 만근 시 최대11일 연차수당 발생 (예시: 계약기간 12개월)	근로기준법
		상여금	25,269,492	기본급×지급율/12월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 초과 반영 불가 (예시: 계약기간 12개월)	지방자치단체 인찰 및 계약집행기준
	퇴직충당금	8,688,780	보수월액(기본급+제수당+상여금)/12월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항제6호 "평균임금" (예시: 계약기간 12개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계		117,542,760				



정비	보정비 (★해고당부나 여해 전액)	산업재해	2,068,200	보수월액×18.6/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별지, 육상 및 수상운수업 1000분의 18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000분의 0.6 · 보험요율은 매년변동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국민연금	4,691,928	보수월액×45/1,000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국민연금법
		건강보험	3,696,192	보수월액× 354.5/10,000	직장가입자와 사업주 100분의 50씩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	473,460	건강보험× 1,295/10,00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	1,251,780	고용안정(보수월액× 25/10,000)+실업급여 (보수월액×9/1,000)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내지 제14조 및 시행령 제12조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 실업급여보험료율: 1천분의 18의 2분의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관한법률
		임금채권보장기금	65,268	보수월액×0.6/1,000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보수총액의 1000분의 0.6(전업종 공통)	임금채권보장기 금사업주부담금 비율
		석면피해구제분담금	4,320	보수월액×6/100,000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2024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6	2024년도석면피 해구제분담금률
		차량보험료	9,000,000	차량보험료/연간 평일수×연간 운행일수×차량대수	▶손해보험협회공시실 > 자동차보험공시 > 자동차보험료 > 대면가입[영업용자동차보험, 승합차(버스)-대형, 중 소형- 시내]	
		감가상각비	21,741,872	(차량단가차량잔존가치) *감가상각률/연간 평일수*연간운행일수/ 8시간*운전원 1일 근무시간*차량대수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차량유지비 (잡재료)	3,565,740	유류대의 38%	2024 건설공사 표준품셈 운전경비 산정(p. 277) 주연료의 38%(기계경비 덤프 트럭 품셈적용)	
		고속도로통행료	-	무료		

복리후생비	파복비	-		▶학교자율 반영 항목 (예산 범위 내)	
	작업화	-		▶학교자율 반영 항목 (예산 범위 내)	
	식비보조	6,360,000	식비보조단가×인원수 (운전원, 보조원) ×연간운행일수	연도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준 지침 매식비 편성기준 적용 (매식비 기준 범위 이내) ▶학교자율 반영 항목 (예산 범위 내)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교통비보조	-	교통비보조단가×인원수 (운전원, 보조원) ×연간운행일수	경기도 대중교통(버스) 기본요금[일반버스, 일반(성인), 교통카드] 단가 왕복 적용 ▶학교자율 반영 항목 (예산 범위 내)	경기도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교통·건설·환경 > G-Bus
	지방소득세	587,688	인건비×지방소득세율	지방세법 제84조의3, 종업원분의 표준세율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지방세법
	소계	53,506,448			
순용역원가		180,432,800	재료비+인건비(운전원, 보조원)+경비		
일반관리비		9,021,588	용역원가의 5%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초과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윤		18,007,044	산출금액의 10% (재료비 제외)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이윤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용역: 100분의 10(초과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원가		207,461,432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20,746,092	총원가×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30조,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부가가치세법
총용역비		228,207,524			

※ 보험료 사후 정산 기준금액은 원가계산서 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을 합한 금액

※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정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별지 제3호서식]

(제5조제4항 관련)

◦ 용역개요 :

1. 일반(학술)용역계약 심사 요약서 1부
2. 설계내역서 각 1부(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등)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 방법: 나라장터 “수요기관업무(물품,공사,용역) > 입찰공고 > 발주계획등록” 메뉴에서 건별로 표준화된 방식으로 입력 및 공개

용역 발주계획 상세		온라인 해능성	
1. 중앙조달요청, 사전규격등록, 입찰공고등록 시 참조(사용)된 발주계획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업무구분	용역	업무유형	신규
[기본정보]			
공개일시	2023/12/25 10:01:07 (최초 공개일시 : 2023/12/25 09:58:08)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통인교육지원청	발주시기	2023/01
조달방식	자체조달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일반용역	협정여부	
용역명	2024학년도 △△△ 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용역규모]			
예산액	₩120,000,000 (백이만원만)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명	△△△ ☆☆☆☆☆		
담당자	김○○	전화번호	031-0000-0000
비고			

- ◆ 기간: 일반 5일, 긴급 3일
- ◆ 방법: 나라장터 “수요기관업무(용역) > 입찰공고 > 사전규격관리” 메뉴에서 사전규격 입력 및 공개
- ◆ 생략이 가능한 경우
 -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용역
 -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용역
 -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용역
 -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 공개를 실시한 물품, 용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용역

1.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9.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2. 0000학년도 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에 대한 입찰공고 이전에 아래와 같이 사전규격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0000학년도 ▲▲초 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지역제한)
다. 공개기간: 0000. 00. 00. ~ 00.00.(5일)
라. 공개내용: 과업지시서
마. 공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 > 수요기관업무(용역) > 입찰공고 > 사전가격관리

불임 과업지시서 1부. 끝.

1. 관련: ▲▲초등학교-000(0000. 00. 00.)
2. 우리학교 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사전견적 공개 결과, **의견없음**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사전규격 상세(용역) 화면 1부. 끝.



○ 사전규격 공개(예시)

사전규격 등록 (용역)

온라인 매뉴얼

1. 입찰참여 희망자들에게 사전규격을 공개하여 해당규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규격을 입력합니다.
해당 항목을 입력하시고 규격서 파일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첨부파일은 최대 5개, 개당 파일 크기 30MB, 총용량 150MB까지 첨부 가능합니다.

3. 사전규격공개 후 의견이 등록되면 수정,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4. 등록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등록마감일시가 경과되어도 의견등록마감일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5. 사전규격 등록 시 나라장터에 공개됩니다. 비공개로 진행해야 하는 건이 등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규격 입력]

발주계획통합번호	5-1-2024-7751000-000001		
*참조번호		*SW사업대상	☒ 비대상 ☐ 대상
*품명(사업명)	2024학년도 △△초 학교 통학차량 입차용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통인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통인교육지원청		
*배정예산	₩	120,000,000	*납품(원수)기한 (납품일수) 2024/12/31 (계약후 일 이내)
현재일자	2023/12/25		*의견등록 마감일시 2023/12/30 23:59

[파일첨부]

자료등록 시 본문 또는 첨부파일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No.	파일명	
1	파일 선택 과업지시서.hwp	

공개

등록

□ 입찰 공고

○ 입찰과 수의계약 비교

구분	수의계약	입찰
공고명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입찰 공고
공고기간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일반: 7일, 긴급: 5일
지역제한	시·군 단위 제한 가능	광역시·도 단위 제한
성립요건	2인수위: 2인 이상 참여 1인수위: 1인 참여	유효한 2인 이상 참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	미환수
	부당청구자 제재	환수
적격심사 대상 여부	제재 대상이 아님 (단 3개월간 수의계약 배제)	제재 후 재공고
	x	○

○ 재공고 입찰

-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다시 공고하여 입찰
- 공고 기간을 제외하고 예정가격, 참가자격 등 조건 변경 불가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 공공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 체결

구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정가격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2.2억원 미만	금액제한 없음
계약방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임에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제한 입찰하여 유찰된 경우 범위를 넓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입찰 실시
-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 조회: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분류	제품명	세부품명
운송과보관 및 우편관련서비스	도로수송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통학운송서비스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직접생산의 확인(제품구분명: 통학운송서비스)

-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
- 대상: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계약체결 시 직접생산 확인증명 필수
- 방법: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부장관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제공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입찰공고 기안문(예시)

0000학년도 ▲▲초 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입찰 공고	내부결재
--------------------------------	------

1. 관련: ▲▲초등학교-0000(0000. 00. 00.)
2. 0000학년도 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입찰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역

용역명	용역설계금액 (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초 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금120,000,000원 (금일역이천만원)	000일	2023. 12. 27.(수) 10:00 ~ 2024. 1. 3.(수) 10:00	2024. 1. 3.(수) 11:00

- 나. 용역규모: 과업지시서 참조
- 다. 계약방법: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 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라. 입찰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총액입찰
- 마. 입찰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 바. 예산과목: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세부항목) ○○○

- 붙임 1. 입찰 공고(안)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계약 특수조건 1부. 끝.

○ 입찰공고문(예시)

※ 본 통학차량 임차용역 입찰공고문은 예시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 및
유·특·초·중 급별에 맞게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및 계약방식, 입찰 참가자격, 공동 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등]

[예시안]

통학차량 임차용역 입찰공고

입찰공고번호	공 고 명	개 찰 일 시
00초등학교 공고 제2024-00호	2024학년도 00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2024. 00. 00.() 11:00

본 입찰 설명서는 ○○초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용역 및 공고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실 ☎ 031-000-0000 ○○○

○○초등학교



경기도○○초등학교 공고 제2024-00호

통학차량 임차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용역(기초)금액
2024학년도 ○○초 통학차량 임차용역	2024. 00. 00. 10:00 ~ 2024. 00. 00. 10:00	2024. 00. 00. () 11:00 ○○초등학교 입찰 집합관PC	금145,000,000원 [추정가격:131,818,182원 +부가가치세:13,181,818원]

※ 본 용역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기간: 2024. 3. 1. ~ 2025. 2. 28.
- 용역 개요
 - ○○초 학생 등·하교 수송

차량운영학교	운행차량	수량	비고
○○초등학교	36인승 이상 버스	2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원 및 보조원 인건비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포함

- 이번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으로 계약 이후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 예산의 삭감이나 감액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용역 물량의 조정 및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업체)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이번 입찰의 계약에 대한 효력과 용역기간은 예산이 배정된 이후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임차용역 과업내역,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노선표 등)를 열람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모든 입찰참가자는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경기도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 적격심사대상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11년 이내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나, 연장요건(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6개월마다 임시검사 기준 적합)을 충족하는 경우, 13년 이내의 차량도 가능합니다.
 - 운행거리 40만km 초과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거 정기 또는 임시 검사를 받은 후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한해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 회사 직영차량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 **○○초 운행 차량(36인승 2대)**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의무사항)**
 - ※「교통안전법」(제9조, 제55조)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참조
 -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운행개시 전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완료하고, 즉시 신고필증 사본 1부를 수요기관(○○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그 비용은 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추후 허위신고임이 밝혀질 경우 낙찰자 결정은 자동 취소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통학운송서비스(7811189902)**] 소지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방법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자본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른 입찰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0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 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입찰서 제출은 기초금액 ±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천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증명서(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 1부.

④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⑤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서 1부.

⑥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붙임3]) 1부.

⑦ 직영차량각서([붙임2]) 1부.

⑧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⑨ 장비보유상황증명서(차량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제작증,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 검사합격증,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등)

☞ 단, 압류가 설정된 장비는 불인정

- 적격심사 평가 결과 예상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천예가, 예정가격, 견적금액 등은 개찰 장소에서 공개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초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최저임금 보장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붙임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통학안전보조원 임금 지급 규정을 불이행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해약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 견적 제출 공고문(예시)

※ 본 통학차량 임차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은 예시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 및
유·특·초·중 급별에 맞게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
[견적에 부치는 사항, 견적 및 계약방식, 견적 참가자격, 공동 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등]

[예시안]

통학차량 임차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번호	공 고 명	개 찰 일 시
□□초등학교 공고 제2024-00호	2024학년도 □□초 통학차량 임차용역	2024. 00. 00.() 11:00

본 설명서는 □□ 초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견적)에서 입찰(견적)자 및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견적)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안내 및 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용역 및 공고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실 ☎ 031-000-0000 ○○○

□□초등학교



경기도□□초등학교 공고 제2024-00호

통학차량 임차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안내공고 기간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용역(기초)금액
2024학년도 □□초 통학차량 임차용역	2024. 00. 00. 10:00 ~ 2024. 00. 00. 10:00	2024. 00. 00.() 11:00 □□초등학교 입찰 집행관PC	금33,000,000원 [추정가격: 30,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0원]

※ 본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기간: 2024. 3. 1. ~ 2025. 2. 28.
- 용역개요
- □□초 학생 등·하교 수송

차량운영학교	운행차량	수량	비고
□□초등학교	36인승 이상 버스	1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원 및 보조원 인건비 등 차량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포함

- 이번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으로 계약 이후 의
회의 예산심의 결과 예산의 삭감이나 감액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용역 물량의
조정 및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업체)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이번 계약에 대한 효력과 용역기간은 예산이 배정된 이후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견적 제출 전 반드시 임차용역 과업내역,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노선표 등)를 열람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모든 참가자는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영역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유류비를 포함한 차량 유지·관리에 드는 일체의 경비 및 운전기사, 통학버스 승차차도우미 인건비 등 통학버스 운영에 드는 모든 비용 포함)
- 경기도 지역제한 견적 제출입니다.
- 본 영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영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영역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의정부시, 남양주시, 양주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11년 이내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나, 연장요건(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6개월마다 임시검사 기준 적합)을 충족하는 경우, 13년 이내의 차량도 가능합니다.
 - 운행거리 40만km 초과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거 **정기 또는 임시 검사를 받은 후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한해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 회사 직영차량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 □□초 **운행 차량(36인승 1대)**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이어야 합니다.(의무사항)
 - ※「교통안전법」(제9조, 제55조)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참조
 -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운행개시 전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완료하고, 즉시 신고필증 사본 1부를 수요기관(□□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그 비용은 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추후 허위신고임이 밝혀질 경우 낙찰자 결정은 자동 취소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통학운송서비스(7811189902)]** 소지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4. 견적 제출

- 본 영역은 전자 견적 제출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의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서 제출은 기초금액 $\pm$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천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최종낙찰자로 개별 통보합니다.(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초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최저임금 보장

-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붙임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통학안전보조원 임금 지급 규정을 불이행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해약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000원	000원	000원

-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됩니다.

11. 참가자 유의사항

- 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 과업지시서(노선도 등),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운행기간 중 차량 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가능한 최근 연식의 차량을 공급하도록 하고,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가운데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초 홈페이지(<http://www.OOOO.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 정보/용역]⇒[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음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0월 00일

□□초등학교장

○ 2인 이상 견적 제출 입력(예시)

나라장터 국가유형자산소매
Korea CHS-Link E-auction System

종합 검색

검색

담당자님 ☑로그인 MWorkPlace e고객센터
 · 사이트별 [원격지원] | 나라장터 관리시스템

[홈](#)
[회원가입](#)
[로그인](#)
[내정보](#)
[마이페이지](#)
[도움말](#)
[공지사항](#)
[문의하기](#)
[채권관리](#)
[채무관리](#)
[국고금관리](#)

[나라장터](#)
[국고금관리](#)
[채권관리](#)
[채무관리](#)

수요기관업무

영역 입찰공고서 입력

영역

요청관리
 입찰공고
 발주계획등록
 사전규격관리
 입찰공고입력
 내의결조관리
 입찰보증이행완료확인
 계약안결과공개
 설계공모참가조회
 계약작성
 계약관리
 변경관리
 자체변경관리(조달청계약건)
 용역관리
 견적지불
 계약진행 위치정보

나의메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공고에 대해 이용수료가 부과됩니다. 부과기준은 나라장터 운영자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구분에 따라 시스템 입찰사항(계약방식, 낙찰사전정방식 등)이 달라지므로 용역구분을 먼저 선택 후 나머지 사항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제도가 아닌 계약·입찰공고는 혁신기업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입찰공고 사용자예외]

[연관정보]

1. 사전규격등록번호		☒ 사전규격 미공개 전
1-1. 매강개사유	수요기관 또는 비발표용, 수익계약대상 물품 및 용역	* 낙찰방법 기준에 따라 미공개사유 다름
2. 발주계획통합번호	2024J100000354000016	

[공고일반]

1. 입찰공고번호	- □ 경락
2. 공고정보	☒ 등록공고 ☐ 변경공고 ☐ 취소공고 ☐ 재공고
3. 용역구분	☒ 일반용역 ☐ 기술용역
4. 국내/국제 입찰구분	국내입찰 ☒ 4. 광고종류 실공고 ☒
5. 국내/국제 입찰사유	국제입찰 비대상(다승역 이하 또는 대상기간아님)
6. WTO특목번호	선택하세요
7. 참조번호	◇○초등학교 중급 제2024-호 (기타법 고위 관리번호 기입)
8. 공고기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융합교육지원 11.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융합교육지원
9. 공사현황	선택하세요
10. 공고명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차량 일차용역
11. 공공포괄 분류명	78111899 도로여객운송서비스

[계약 및 입찰방식]

1. 계약방법	수익(총액) 4157 수익(총액)소액-견적입찰(2천 이상 전체 제출)	* 용역구분을 먼저 선택해주세요.
2. 입찰방식	견적입찰	3. 계약일부
4. 낙찰방법	☐ 조달청기준 ☒ 행정안전부기준 ☐ 기타 1 제한회차	하용 (하용: 제입찰 처리)
5. 1. 계약방식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6. 낙찰율(%)	88%	비공개
7. WFO수의계약사유		
8. 조항호	025010504-20230101 추경가산 2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물품-용역(소기업 소상공인 계약)	

[입찰방법]

1. 입찰서류접수일시	2024/01/26 10:00	2. 입찰서류접수마감일시 2024/02/02 10:00
3. 개찰(입찰)일시	2024/02/02 11:00	(집수마감 최소 1시간 이후) * 해당 공고 건의 개설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장소	◇○초 집합장 PC	
5.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4/02/01 18:00	6.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시
7.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및 구성방식	없음 공통수급협력	8.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9. 공동수급협정서 공동면허유무-체크여부	☐ 면허모양유무 체크 안함 ☐ 면허모양유무 체크함 <-? 클릭하여 내용 반드시 확인하세요.	
10. 공동수급협정서 연회사건확인 여부	☐ 사전확인 안함 ☐ 사전확인	
11. PO상신신청서 접수방식	없음	12. PO상신신청서 접수기한
13. TP 및 기술재평가 접수방식	수기	14. TP 및 기술재평가 접수기한
15. 실적제출여부	아니오 * 추첨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계약은 실적 제출 기준으로 참가자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16. 실적상신신청서 접수방식	없음	17. 실적상신신청서 접수기한
18. 동기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 미용 ☐ 별도추첨 <-? 클릭하여 내용 반드시 확인하세요.	



나라장터

비밀유지합의서

Public Notice of Information System

통합검색

검색

· 사업영역

영역지정

나라장터

관리사이트

정보

공공

민생

국회

국무

지방

지방

공공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

나라장터

나라장터

나라장터

수요기관업무

영역

요청관리

입찰공고

발주계획등록

사건규격관리

입찰공고입력

나라공고관리

입찰보탈승인/발판승인

제안평가결과관리

실제공모결과조회

계약관리

계약관리

변경관리

지체변경관리(조달청계약만)

영역관리

전자지불

계약인행 유지정보

나의 메뉴

로그인

영역입찰공고서 입력

1. 국가통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을 실행하는 공고에 대해 이용수요가 부과됩니다. 부과기준은 나라장터 운영자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구분에 따라 시스템 입찰사항(계약방법, 낙찰사전정방식 등)이 달라지므로 영역구분을 먼저 선택 후 나머지 사항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결정의 대외에 의한 개인 입찰공고는 혁신성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영역입찰공고 사용자매뉴얼]

연관정보

1. 사전규격등록번호

☒ 사전규격 미공개 건

1-1. 미공개사유

수요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익계약대상 물품 및 용역

☒ 낙찰방법 기준에 따라 미공개사유 다름

2. 발주계획등록번호

2024J100003364000016

공고일반

1. 입찰공고번호

-

검색

2. 공고장보

☒ 등록공고
☐ 변경공고
☐ 취소공고
☐ 재공고

3. 영역구분

☒ 일반물품
☐ 기술용역

4. 공고종류

실공고 ☒

5. 국내/국제 입찰구분

국내입찰 ☒

6. 긴급여부

☐

7. 국내/국제 입찰사유

국제입찰 비대상(고시금액 이하 또는 대상기관임)

8. WTO용역번호

선택하세요

9. 참조번호

◇◇조달청 공고 제2024-호 (기관별 고유 관리번호 기입)

10. 공고기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

11. 수요기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

13. 공사현장

선택하세요

14. 공고명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지장 설치용역

15. 공공조달 분류명

78111899 도로여객운송서비스

계약 및 입찰방식

1. 계약방법

수의(총액) 4157 수의(총액)소액-견적제(2인 이상 견적 제출)

☒ 용역구분을 먼저 선택해주세요.

2. 입찰방식

전자입찰

3. 계약일련번호

허용 ☒ (허용: 재입찰 처리)

4. 낙찰방식

☐ 조달청기법
☒ 협상단번전거부
☐ 기타

1 제한회차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4-1. 계약법구분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5. 낙찰하한율(%)

88 %

6. 추정번호

비공개

7. WTO주의계약사유

8. 조항호

025010504-20230101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소기업 소상공인 계약)

입찰절차

1. 입찰서류접수개시일시

2024/01/26 10:00

2. 입찰서류접수마감일시

2024/02/02 10:00

3. 개찰(입찰)일시

2024/02/02 11:00 (접수마감 최소 1시간 이후) - 해당 공고의 개찰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장소

◇◇초 시청당 PC

5.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4/02/01 18:00

6.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시

7.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및 구성방식

없음 ☒ 공동수급제 ☐

8.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9. 공동수급협정서 공동면허보유제 여부

☐ 면허보유여부 체크 안함
☐ 면허보유여부 체크 함

<-? 클릭하여 내용 반드시 확인하세요.

10. 공동수급협정서 면허사전확인 여부

☐ 사전 확인 안함
☒ 사전 확인

11. PC심사신청서 접수방식

없음 ☒

12. PC심사신청서 접수기한

13. TP 및 기술자평가 접수방식

수기 ☒

14. TP 및 기술자평가 접수기한

15. 실적제하여부

아니오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계약은 실적을 기준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6. 실적심사신청서 접수방식

없음 ☒

17. 실적심사신청서 접수기한

18. 등기발행 낙찰자 자동유효등록유무

☒ 미용
☐ 별도수취

<-? 클릭하여 내용 반드시 확인하세요.



○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예시)

※ 본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붙임 양식은 예시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 및 유·특·초·중 급별에 맞게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 (용역기간, 용역의 범위, 차량조건, 대금 지급 등)

[예시안]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차량 임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초등학교(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와 통학차량 전세 운송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목적)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및 교육 활동의 편의 제공을 위한 통학차량의 운송 및 관리에 목적이 있다.

제3조(계약의 적용) 본 계약의 당사자는 “학교장”으로 계약이후 차량운행, 노선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 대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의 관리주체는 “학교장”으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차량 임차용역”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을 받은 자로서 “학교장”이 지정한 구간 및 일정에 의거 통학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용역 기간) 용역 이행 기간은 2024. 3. 1. ~ 2025. 2. 29.(1년간)로 한다.

제6조(용역의 범위) ① 이 계약에서 정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계약당사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별다른 소명 없이 용역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

1.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학차량 운행
(예시)(유아용좌석은 비교에 별도 표기)

학교명	차량규격 (성인좌석기준)	운행대 수	연간 운행예정일수 (등·하교)	비고
□□초등학교	25인승형(16~29인승)	1	250일	

※ 교육활동에 필요한 추가 운행이 관외 지역에 있어, 차량을 필요할 시 임차 업체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학교는 전세버스 임차료에 준하여 유상 지원한다.

2. 통학차량의 승차정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필한 후 차량등록증 및 신고필증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학생 전출입·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운행 노선, 운행 일수, 운행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제7조(차량조건) ① 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필한 차량으로 회사직영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25인승형(16 ~ 29석) 차량 1대로 하며, “학교장”이 요구한 노선별 1회 최대 탑승 인원(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포함)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대인 무한배상)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통학차량은 최초등록일 11년 이내의 차량으로 주행거리 40만km 이내이어야 하며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완벽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적합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차량 대체 시에도 동일하다)

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11년 이내의 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으나, 연장요건 충족(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6개월마다 임시검사 기준 적합) 시 13년 이내 차량도 가능하며, 운행거리 40만km 초과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거 정기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한해 입찰 참가 가능.

④ 통학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및 요건(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구조,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통학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서 규정한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⑥ 배정차량은 냉난방기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 등이 양호한 차량이어야 한다.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장치(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안전벨, 통학버스안전카시트 설치해야하며, 위 세가지장치는

학교에서 설치지원 할 경우 계약종료 시 반환함)가 반드시 설치되어있는 차량으로 안전보안을 위해 블랙박스, 후방영상장치, 후방경고음 발생장치, 운행기록장치, 광각실외후사경, 승하차보호기 등을 설치한 차량이어야 함
(미설치업체 참가 제한)

- ⑦ “계약상대자”는 운행구간, 운행시간표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초등학교 통학차량”라는 표지판과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안전수칙을 부착 운행 하는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 ⑧ “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도로교통법」 제53조 제6항에 따라 동승보호자를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 “학교장”이 요구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며,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에 따른 벌칙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⑨ “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유아보호용 장구를 학교장이 제공할 경우, 이를 장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기간이 종료되는날 학교장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반납하여야 한다.
- ⑩ 신차 등록예정인 경우 등록 기일까지 임시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⑪ 배정차량의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압류 및 담보 제공이 없는 차량을 배정 (차량 구매 시 할부로 인한 근저당 설정은 제외)하여야 한다.
- ⑫ “임대업체”는 통학버스 운전자를 회사소속 정규직원으로 고정 배정하여 운행하게 하며 운전자의 처우 및 안전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반 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8조(제비용 부담) 제7조에서 규정하는 차량조건을 갖추기 위한 비용 및 차량유지 관리에 필요한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의 제비용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9조(대금지급) ① 용역료는 계약금액을 분할(1/12)하여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간 운행일수가 제6조에서 정한 연간운행일수 미만이면 마지막 대가 지급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과업내용(운행 일수)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익월 초에 차량운행일지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학교”에 용역료를 청구하며, “해당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 ③ 용역비에는 차량 운행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검사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식대 등)이 합산된 금액이므로, “해당 학교”에 별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 정산 등”에 따라 입찰 금액 산정 시 예정 가격에 계상된 금액인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마지막 대가 청구 시 사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붙임7】에 따른 동승보호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금은 기초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기본급+제수당+퇴직충당금)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되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내역을 분기별로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 ⑥ “계약상대자”는 최종 대가 청구 시에 동승보호자의 퇴직금 청구서(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에 관한 근로자 동의서)와 퇴직금 지급 영수증(또는 퇴직연금 납부 증빙서류)을 첨부 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의 임금지급규정을 불이행할 경우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이 미이행의 시정을 요구한 즉시, 시정·보완할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 외 교육목적상 또는 학교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초과 운행에 대한 추가비용은 해당학교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제10조(운전자의 자격) ① 운전자는 생년월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자이어야 한다.

- 1. 운전자는 만 65세 이하(2024. 3. 1.기준)로 1종 대형면허 및 버스운전자자격증 취득자로 대형 버스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에 의거 만65세 이상 만70세 미만인 경우,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운행 가능(적합판정 확인 가능 서류 제출)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 3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통학차량 운행 개시 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다음사항을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운전자의 교체 시에도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일 5일 이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운전자는 “학교장”이 요구하는 통학차량 관련 자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학생수송차량 마다 운전자를 각각 지정하여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자로 운행하여야 한다. 단, 학생수송차량 및 운전자 등의 교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 1주일 이전에 “임차학교장”에

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운전자는 차량 운행 시간 외에는 학교 내에 머물지 않도록 별도의 대기 공간 및 주차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운전자의 의무) 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방지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식음, 전화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운행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8. 이용자 이외의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수수 행위
9.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10. 기타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욕설, 폭언, 운행 중 침 뱉는 행위 등) 및 안전운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② 상기 제1항부터 9항까지의 의무를 대만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와 “운전자”는 만·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이용자에게 친절한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⑤ 운전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응급조치 한 후 학교장 및 경찰서에 즉시 보고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 사항 등

⑥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은 즉시 학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 운전자는 차량의 운행 전후 및 운행 중에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승하차 시 학생이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통학차량을 출발시켜야 하며, **운행중로 시 차내 학생 유무 확인** 등 탑승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⑧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차량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고, **통학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의 안전 상태와 함께 매일 “임차학교장”에게 제출한다. 또한 운전자는 차량 안전점검표를 매월 작성하여 “임차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임차학교장”은 차량 안전점검 사항을 확인한다.

⑨ 운전자는 해당학교에서 **음주감지를 요청할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2조(동승보호자 지정 및 동행 탑승) ① “계약상대자”는 학생들의 탑승지도 및 운행 중 버스 내 안전지도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53조의 제3항에 의거 통학차량 탑승 통학차량 보조원을 지정, 동행 탑승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에 의거 학생 수송 시 **자체적으로 고용한 동승보호자를 반드시 탑승**시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미탑승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만·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동승보호자’은 제13조의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어야 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부득이 동승보호자의 교체 시에도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일 5일 이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통학차량 일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하고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학교장”이 요구하는 학교 자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동승보호자의 의무) ① 탑승시 동승보호자는 차량이 멈추면 학생이 탑승하기 전에 먼저 출입문 앞으로 내려 학생이 차례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차량 탑승 중에는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③ 운행 중 일어서거나 옆 사람과 장난을 치지 않도록 지도하고, 창문 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지 않도록 지도한다.

④ 차량이 멈추면 학생이 하차하기 전에 먼저 출입문 앞으로 내려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 학생이 차례로 하차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⑤ 하차 전 안전벨트를 원상태로 끼워 놓도록 지도한다.

⑥ 하차 시에는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⑦ 하교차량 출발 10분전에 담당차량 출입문 앞에서 학생의 탑승을 지도한다.

⑧ 도로를 건너야 하는 학생은 통학차량 앞으로 좌, 우를 살펴 학생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⑨ 하차 시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⑩ 상기 제1항부터 제9항의 의무를 대만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시 **“계약상대자”와 “동승 보호자”는 만·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⑪ 동승보호자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 행위
 2. 차량 내 흡연 및 식음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5. 기타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욕설, 폭언, 운행 중 침 뱉는 행위 등) 및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
- ⑫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통학차량 일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차량,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대체) ① “계약상대자”는 배정된 차량의 계속 검사, 고장 수리 또는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학교”에 신고하여야 하며, 운행 전일까지 제16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대체차량,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대체로 통학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해당학교장”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3회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총 계약기간 중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지정된 정차 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자의 불친절 및 난폭 운전, 동승보호자의 불친절 등 불편부당한 사례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 분	처 리 내 용	비 고
1회	각서제출, 용역비 ₩50,000원 공제	
2회	각서제출, 용역비 ₩100,000원 공제	
3회	용역비 ₩150,000원 공제, 운전자 또는 동승보호자 교체	

③ “을”이 차량을 결행, 운전자의 무단결근, 차량 미정비로 인한 정상 운행의 불가능, 운행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체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 1회당 1일 지급 단가*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 지급시 공제한다.



*1일 지급단가: 총 계약금액을 연간 등하고 총 운행일수로 나눈 금액

제16조(서류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 등록증 사본 및 보험증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 직영차량 운행 각서,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학차량 신고필증 사본은 운행 전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발급 원본), 버스운전자 자격증 사본, 운행차량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발급),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와 동승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를 아래 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학교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학교장”에 제출하도록 한다(단,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미 제출할 시에는 운전자와 동승보호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학교명	운전자			동승보호자			차량번호	연식	차종	주행거리 (계약일 기준)	비 고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제17조(용역업체 관리·지도) ① “학교장”은 운전자, 동승보호자 및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학교장”의 정당한 개선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약속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18조(보험 등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대인 무한배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해당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교장”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 보호의무) “계약상대자(운전자 포함)”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로 인하여 학교 및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 시에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의무를 지닌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 양도 금지) ① 계약으로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용역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상호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계약의 해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 시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2. 제16조 규정에 의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15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해당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자동차 전세운행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무단으로 통학차량을 3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④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학교장”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제22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 위자료, 합의금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및 계약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는 교체차량에도 적용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학교의 시설 및 물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을 가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3조(소송의 관할 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해당학교”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기타조건) ①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며, “학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운전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에 정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운전자를 산재(상해)보험 가입조치 하며(용역비에 포함), 법률에 의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붙임 1. 통학차량 이용 학생 명단 1부.
2. 어린이 통학버스 일일 자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1부.
 4. 통학차량 운행일지 1부.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6.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7.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9. 임차용역 확약서 1부. 끝.



통학차량 이용학생 명단

○○초등학교(교무실 ☎000-0000, 행정실 ☎000-0000, 동승보호자 010-000-0000)

순	학년 반	성 명	승·하차 지점	연락처		
				학생	보호자	담당교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통학차량 이용학생 명단은 반드시 차량 내 비치(운행 차량별 비치)

어린이 통학버스 일일 자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일	20XX. . .		탑승인원			
			등교	명	하교	명
점검자	운전자	(서명)	확인자		(서명)	
	동승보호자	(서명)				

구분		점 검 내 역	점검결과	
			예	아니오
일일 안전 점검 사항	운 전 사	통학차량 경광등, 정지표시장치, 후방감지기(후진경고음장치) 등을 비롯하여 각종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차량 외부상태(타이어 공기압 등) 및 시동 후 엔진 등 각종 계기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브레이크 작동상태는 상시 점검하여 안전한 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가?		
		통학차량 내 날카로운 곳 또는 위험한 물건(인화물질 등)은 없는가?		
		통학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가 고정 설치되어 있고, 소화기 압력은 적당한가?		
		음주감지기를 통해 운전자의 음주 감지를 실시하였으며, 이상은 없는가?		
	동 승 보 호 자	통학차량 내 비상용 망치 및 구급상자가 구비되어 있고 위치표시가 되어있는가?		
		통학차량 내 탑승학생(보호자)의 연락처(명단) 및 비상연락망이 비치(부착)되어 있는가?		
		통학차량 내 운행노선 및 시간표, 각 정류장의 승·하차 학생 명단은 비치하고 있는가?		
		차량 내 조용히하기, 질서지키기 등 지도를 하였는가?		
		탑승학생이 자리에 착석한 동안 좌석안전띠 착용 등 보호 조치를 하였는가?		
		탑승학생 하차 시 차량에서 직접 내려 탑승학생이 안전하게 승·하차하는지 확인하였는가?		
		차량이 출발 또는 후진하기 전 주변상태 및 아동위치는 확인하였는가?		
	공 통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탑승학생이 하차 후 차량 내 모든 좌석을 직접 둘러보며 남아있는 학생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2020. 11. 27.>

통학차량 운행일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운행연월 20 . .		
성명 (운영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차종(차명)							교육시설명					
차량등록번호							정원		제작연도			
좌석 안전띠 착용	월일											
	여부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	월일											
	여부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53조7항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합니다)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차량번호		승차정원	45인승	관리운전자	직 : 운전자 성명 : 김□□
------	--	------	------	-------	------------------

(단위 : 명, km, ℓ)

일자	용무 (등/하교, 체험학습 등)	탑승 인원 (명)	출발지	도착지	운행 시간	운행거리 (km)		차량 점검사항			직영차량 작성				확인자 (서명 또는 인)
						금일 운행	누계	운행 전	운행 후	특이 사항	급유 량	유류 소모량 금일 소모	유류 소모 누계	유류 잔량	
3/2	등교	25	학교	학교	08:00~ 09:00	18	18	○	○						예/시
3/2	하교	25	학교	학교	15:00~ 16:00	21	39	○	△		200	15	15	185	예/시
					~										
					~										
					~										

- ※ 점검사항 : 운전자가 차량 청결상태, 각종오일 체크, 냉각수, 타이어상태, 브레이크, 누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재
 - “운행 전”, “운행 후” 차량 점검결과 작성 (양호 : ○, 수리요 : △, 교체요 : X)
 - “특이사항” : 차량 점검시간 및 점검결과 등 특이사항 기록
 - 2017학년도부터 반드시 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임차차량은 유류관련 부분 생략 가능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자동차제작증 1부.
3.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4.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귀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임차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기초금액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오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주 소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 학교장 귀하



○○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확약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위 기관은 해당 공고의 1순위로 선정되어 적격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학교에서 제시한 공고문의 8번 사항 중 『다른 지역, 또는 ○○학교의 다른 권역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예정)을 받은 경우 해당 물량은 제외한다』를 충분히 숙지하고 다른 지역과 중복 되지 않은 차량을 적격심사용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중복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제재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적격심사제출차량

- 경기0가1234(25인승)

2024. . .

상호(법인)명 : 00관광

대표자 : 인

○○ 학교장 귀하

□ 수의시담

○ 수의시담

- 계약상대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체가 금액을 제시하고 그것을 계약담당자가 검토하여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조율한 후 계약하는 방식
※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을 통한 가격협상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1인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수의시담 방법

- 전자시담(G2B), 서면, 팩스 등
- 수의계약 가능자는 입찰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정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며, 최초의 입찰 시 정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귀 기관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정하여 시행

○ 수의시담 기안문(예시)

2024학년도 ▲▲초 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수의시담 요청	◆◆관광 대표이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3. [2024학년도 ▲▲초 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에 대하여 귀 사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2024. 00. 00.(0)까지 수의시담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시 수의시담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용역명: 2024학년도 ▲▲초 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나. 용역기간: 총000일 다. 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고 라. 설계금액: 금00,000,000원(금 원) 마. 업무처리 절차: ▲▲초와 수의시담 후 용역계약 체결	
불임 1. 과업지시서 1부. 2. 특수조건 1부. 끝.	



□ 개찰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

○ 개찰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

- 2인 이상 견적 제출(소액수익):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낙찰하한율 90%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낙찰하한율 88%
- 일반입찰(제한입찰):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

○ 2인 이상 견적 제출 개찰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 기안문(예시)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구역 수익계약 안내공고 개찰 결과 보고 및 계약상대자 결정 내부결재

1. 관련: ▲▲초등학교-0000(2024. 00. 00.)
2. 2024. 00. 00.(0)에 실시한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구역 수익계약 안내공고 개찰 결과, 개찰 1순위자를 아래와 같이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 개찰 결과

(단위: 원)

건명	업체명	대표자	주소	낙찰금액	낙찰률	비고
▲▲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구역	◆◆관광	000	경기도 00시 00로	30,000,000	88.100%	

붙임 개찰결과보고서 1부. 끝.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구역 계약상대자 결정 알림 ◆◆관광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 00. 00.(0)에 실시한 000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구역 수익계약 안내공고 개찰 결과 귀 사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었기에 알려드리니, 2024. 00. 00.(0)까지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건명	업체명	대표자	주소	낙찰금액	낙찰률	비고
▲▲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구역	◆◆관광	000	경기도 00시 00로	30,000,000	88.100%	

끝.

○ 일반입찰(제한입찰) 개찰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안문(예시)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구역 적격심사대상자 결정 내부결재

1. 관련: ▲▲초등학교-0000(2024. 00. 00.)
2. 2024. 00. 00.(0)에 실시한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구역 공고 개찰 결과, 개찰 1순위자를 아래와 같이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하고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고자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

(단위: 원)

순위	업체명	대표자	주소	낙찰금액	낙찰률	비고
1	●●관광	000	경기도 00시 00로	140,392,000	87.745%	

붙임 개찰결과보고서 1부. 끝.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구역 적격심사 서류 제출 안내 ●●관광

1. 관련

가. ▲▲초등학교 공고 제2024-00호 「▲▲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구역 입찰 공고」

나.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2. 2024. 00. 00.(0)에 실시한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구역 개찰 결과, 귀 사가 1순위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계약을 위한 적격심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다음 제출서류를 갖추어 2024. 00. 00.(0)까지 교육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내역

(단위: 원)

건명	업체명	대표자	주소	낙찰금액	낙찰률	비고
▲▲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구역	●●관광	000	경기도 00시 00로	140,392,000	87.745%	

나. 평가기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다. 제출서류

-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4)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 5)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서 1부.
- 6) 근로조건 이행확인서 1부.
- 7) 직영차량 각서 1부.
- 8)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9) 장비보유상황증명서 1부. 끝.



○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기안문(예시)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낙찰자 결정

내부결재

1. 관련

가. ▲▲초등학교-0000(2024. 00. 00.)「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적격심사대상자 결정」

나.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2. ▲▲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개찰 결과 1순위 업체인 ●●관광으로부터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검토 결과, 평가총점이 적격기준에 적합하므로 다음과 같이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업무 안내 등 후속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위: 원)

건명	예정가격	낙찰금액	낙찰률	종합평점	낙찰업체
▲▲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160,000,000	140,392,000	87.745%	95점	●●관광

붙임 적격심사표 1부. 끝.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낙찰자 결정 알림

●●관광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건과 관련하여 귀 사가 제출한 적격심사서류를 검토한 결과, 적격으로 평가되었기에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2024. 00. 00.(0)까지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용역명:
- 수요기관:
- 입찰일시: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식

00초등학교장 귀하

접수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역명 : 4. 제출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00초등학교장 (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공고번호	
입찰일시	
용역명	
용역기간	
수요기관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2. 심사대상입찰자

회사명	(전화)
대표자	
업종구분	입찰에 참가한 업종을 기재합니다.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점)

구분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이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지역참여도			
입찰가격			

[별지 제3호서식]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FAX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출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분	학술(), 정보통신() 청소(), 시설관리() 경비(), 폐기물처리(), 기타분야(),		
	용역개요						
	계약내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						
	주소: (FAX:)						
	발급부서: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OO초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신규 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

○ 공고번호: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채용내역

채용형태	채용인원	월 급여	근로계약기간
신규 직원	1명	217만원	2024. 2. 1.~
		〈예 시〉	

당사는 ()사업 낙찰시 위와 같이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경기도 생활임금 확산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신규 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인)

현장감독 확인	
소속	
직급	
성명	(인)

OO초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괄	1	·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2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납품기관(수요기관),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관계기관	입찰자 선택
근로조건 이행계획	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4호
생활임금 지급계획	6	· 신규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5호
신인도	7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실적	-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37	27	12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30	20	15	10
	지역참여	- 지역업체 참여도	3	3	3	-
신인도		- 신인도 평가기준	+4.5 ~△5.0	+4.5 ~△5.0	+4.5 ~△5.0	+6.5 ~△5.0
입찰가격		-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30	50	70	90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text{평 점} = 3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 평점은 20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text{평 점} = 5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text{평 점} = 70 - 20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87.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text{평 점} = 90 - 20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 |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이행실적 평가기준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점, 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해당용역 기준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 이상	37	27	12
	2) 100% 미만 75% 이상	33	24	11
	3) 75% 미만 50% 이상	29	21	10
	4) 50% 미만 25% 이상	25	18	9
	5) 25% 미만 0% 이상	21	15	8

- 가.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 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 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 추정가격(또는 규모) 대비 최근 3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한다.
- 다.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 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라. 해당용역을 분야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분야, 분야별 평가비율 및 기준금액(규모)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행실적 평가는 분야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에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마.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 바.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점, 추정가격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15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4.5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4	9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3	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0	6

- 가.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나.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라.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 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기준: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1) 경영상태: 3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15.0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13.5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12.0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10.5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9.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15.0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13.5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12.0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10.5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9.0	

2) 경영상태: 2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9.0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8.0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7.0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6.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9.0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8.0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7.0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6.0	

3) 경영상태: 15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7.5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7.0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6.5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6.0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5.5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7.5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7.0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6.5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6.0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5.5	

4) 경영상태: 1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5.0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4.5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0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3.5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3.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5.0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4.5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0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3.5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3.0	



- 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한다.
- 나.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회계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상태를 평가한다.
- 라.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 마.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라"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가점수(점)
가.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1.0
(2) 여성고용 우수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25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75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나.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 촉진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1.5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2.0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의무 고용률 이상인 기업	+1.0

다. 가족친화 및 일하기 좋은 일터 기업지원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0
(2)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을 받은 기업	+2.0
(3) 최근 1년간 남성 육아휴직자가 남성근로자 총인원의 2% 이상인 기업	+2.0
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회적기업	+2.0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2에 따라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2.0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2.0
(4)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내 시장·군수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2.0
(5)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받은 사회적협동조합	+2.5
(6)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의한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2.5
마.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1)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바. 공동수급체 구성	
-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사.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대상에 한함)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서 제출	+1.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1.0
-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서 제출	
- 포괄적인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서 제출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약속서 제출	
아. 생활임금 지급 기업 지원 및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촉진	
(1) 당해 사업 관련 신규 채용자에 대해 경기도 또는 경기도내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약속서 제출	+2.0
- 신규직원 1명당 0.2점 부여(장애인직원 고용시 1명당 0.4점), 최고 2점	
- 당해연도 해당사업 자치단체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 "경기도 생활임금 서약제"를 준수한 기업으로써 '생활임금제 서약이행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유효기간내에 있는 확인서)	+2.0

자. 경기도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에서 성과공유 과제확인서를 발급 받은 도내 위탁 중소기업(유효기간내에 있는 확인서)	+2.0
차.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천 촉진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 기업	+2.0
카. 특별신인도(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한함) – 최근 3년간 해당용역 이행실적 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2.0
타. 유공납세자 지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 납세자의 날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및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지사가 ‘유공납세자’로 선정한 자	+1.0
파.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기업	+1.0
하. 법령 등의 위반에 따른 제재 (신인도 감점) (1) 최근 3년간 근로(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하도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관련법 위반한 자 –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 – 사망재해.산재은폐·중대산업사고 발생 등 사업장	△3.0 △2.0 △1.0

- 1)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 2) “가”, “나”, “다”, “라”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 경기도지사, 경기도내 시장·군수가 각각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의 (3)은 제외.
- 3) “가-(2)” 여성 고용에 따른 고용률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 4) “나-(2)”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 5) “나-(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률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 6) “다-(3)”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남성 육아휴직자의 해당 기업의 휴직 관련 승인서류와 육아휴직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서류), 입찰공고일 기준 남성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모두 제출



- 7) “가”~“라”의 심사항목 내의 각 항목이 중북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8) “마”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 9) “바”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 한 경우에 평가하되 중소기업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이 중소기업으로서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한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 10) “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하며 임금단가는 원가계산서에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임금단가 등을 기준으로 하거나 보통 인부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11) “아” (1)의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은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 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준공 검사 시에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사업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약서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의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해당사업 개시일이 포함된 당해 연도 경기도 및 31개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 12) “아” (2) 생활임금 서약제 신청·등록한 시군에서 발급받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확인서 제출
- 13) “자”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성과공유제종합관리시스템 www.benis.or.kr에서 발급받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성과공유과제 확인서 제출
- 14) “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당해 용역 기초금액의 15%의 구매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인증서 등) 제출
 -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 및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 15) “타”모범납세자 등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16) “하”(1)의 감점 적용은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 17) “하”(2)의 감점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 연도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자료에 반영된 사업장에 대해 평가한다.

5.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 1)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 2)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 한도(3점) 점수 적용





□ 계약 체결

○ 통학버스 계약체결 형태별 구분

- 확정계약: 예정가격 확정 후 계약
- 총액계약: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 대상, 자의적 분리 불가
- 단년도계약: 당해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
- 단독계약: 계약상대자가 1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 공동계약: 2인 이상의 수급인이 잠정적으로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체결(공동이행)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계약 등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경우로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 계약체결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계약보증금
 - 납부방법: 현금 또는 계약보증서로 징구
 - 납부금액: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접수방법: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또는 직접 접수
- 수입인지: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계약금액	인지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지방계약법 제 14조에 의거 작성한 계약서)	~ 1천만원 이하	미부과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계약체결 기안문(예시)

0000학년도 ▲▲초 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	내부결재
-----------------------------	------

1. 관련: ▲▲초등학교-0000(0000. 00. 00.).
3. [0000학년도 ▲▲초 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자 합니다.

가. 용역명: 0000학년도 ▲▲초 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나. 계약금액: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다. 계약상대자: ◆◆관광 주식회사 대표 ○○○(000-00-00000)
 라. 계약기간: 0000. 00. 00.~0000. 00. 00.(000일)
 마.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붙임 1. 계약서(안)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특수조건 1부. 끝.

○ 계약서(예시)

나라장터

전자입찰관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입찰관리시스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사이트맵

원격지원

나라장터 관련사이트

수요기관업무

용역

요청관리

입찰공고

예가작성

계약관리

신규용역계약서작성

장기용역계약서작성

계약물량서접수

계약물량이행보증서접수

용역계약제출통보

용역계약사수신 목록

계약실적및통계조회

용역계약제출(종단)

계약이행

계약이행 이력조회

계약제출및납수신목록

변경관리

가맹점결판관리(조달청계약)

용역관리

전자자물

계약이행위탁정보

나의 메뉴

00

용역계약서

1. 국가기관은 지출이 국고회계를 사용할 경우는 미리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에서 계약요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초안 송신 후 계약서를 수정할 경우, 일체의 용역정보가 초기화 됩니다.

3. * 는 필수항목입니다.

이동장타기정보

문서번호

▲▲초등학교-0000

작성일자

2024/02/05

문서기종

원본

계약번호

계약번호는 적정/송신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관리번호

용역명

0000학년도 ▲▲초 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신규참가구분

신규(단년도)

수요기관담당자

수요기관

대표계약업체

[계약 정보]

현장

경기도 의정부시

현장수기입력

계약일자

계약체결시 입력합니다.

120,000,000 원

금액 확인

120,000,000 원

금차계약금액

1원 단위 절사

1원 단위 절사

계약보증금

10 %

계산

계약보증서

지급서대제

전자결수 및 적점수입(현금결수)

하자보수보증금

2024/03/04

하자담보책임기간

착수일자

2024/03/04

착수일로부터(착수일 포함), 용역기간 입력 후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착수일자는 자동계산됨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금차 306 일, 총차 306 일

금차수일자

2025/01/03

종원수일자

2025/01/03

계약참구분

국가

지방

지체상금률

0.25 %

부가세율

10 %

기안 본문1

1. 계약자는 입찰 시 공시된 공고문, 용역입찰요청서, 용역입찰특별요청서, 원형계약입찰특별요청서, 설계서 및 준공일정 사항과 용역계약일부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원형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및 붙임 잔차계약 특약사항이 이 계약의 일부임을 확인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기안 본문2

[재원 및 인지세 정보]

지방제당입액

해당없음

0 원

지방제당정보

인지세대상여부

인지세 대상여부 및 금액 확인

내 용 확인 후 체크해야만 문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관련 안내사항

발주기관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인 경우 연대 납부가 원칙이며, 발주기관 계약상대업체 간 인지세 납부 비율을 별도 협의하여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과세 대상여부

Y

관련규정

인지세액

150,000 원

92

93

수요기관업무

공약

- 유관기관
- 임상결과
- 여과작성
- 제각관리
- 신용유계계약작성
- 강기유계계약서작성
- 계유금입서작성
- 계약유계이행보통서작성
- 유계계약제결통보
- 유계계약서수신 목록
- 계약실적제결통제고회
- 유계계약제고(준단)
- 계약관리
- 계약관리 이력조회
- 계약제 결할필수신목록
- 변경관리
- 지배변경관리/조달청계약관리
- 통계관리
- 전자결합
- 계약전행 위치정보

나의태닝 50

[세박루가 성모]

* 계약유형	유역	영역
요청관리번호	00000000000000000000	입찰관리번호 00000000000000000000
* 외부재정시스템에 의하여 지출을 처리하는 경우 필수항목입니다.		
외부재정정보	00000000000000000000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공개 ☐ 비공개 * 나라장터를 이용한 계약관련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비공개시에는 관련 근거를 일련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선택시 나라장터 통합검색, 조달청계약요청현황, 계약현황 및 조달청발령통 등에서 계약정보가 공개(조회)되지 않습니다.	
* 수의계약비공개사유	선박	
* 비공개사유수기입력내용		
공공	00000000000000000000	
* 공공조달 분류	78111899 도로여객운송서비스	
지출권	00000000000000000000	
검시자	00000000000000000000	
감수자	00000000000000000000	
낙찰율	00000000000000000000 %	추정금액 00000000000000000000 원
낙찰지속경일	00000000000000000000	낙찰금액 00000000000000000000 원
낙찰방법	00000000000000000000	
입찰일자	00000000000000000000	국계약참여부 ☐ 예 ☐ 아니오
PQ여부	☐ 예 ☐ 아니오	PQ합격업체수 00000000000000000000
과점실명참가자수	00000000000000000000	
응찰자수	00000000000000000000	
	예정가격	00000000000000000000 원

[사무관 또는 서기관 / 계약관 정보]

사무관 또는 서기관	호칭	예) 음악 계약담당 사무관	계약관	호칭	예) 음악 계약관 조달청장
	성명			성명	▲▲ 조동학교장 ○○○

[계약자 정보]

No.	*구분	*공동도급구성명시	*대표자	*담당자	공종
		*계약업체		*지분율	공동도급사유
1	대표	단독			
			무점유주	100 %	선택하세요

[총사업비사업정보]

종사업비경보
선택 ▼

[첨부문서]

1. 자료통신 시 본문 또는 첨부파일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반드시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첨두파일의 첨부가능 용량**은 기단 60MB 총 60MB입니다.

No.	문서명	파일명	순서번정
1	내역서		찾아보기... ▲▼
2	과업지시서		찾아보기... ▲▼
3	용역계약 일반조건		찾아보기... ▲▼
4	용역계약 특수조건		찾아보기... ▲▼
5	수의계약 각서		찾아보기... ▲▼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찾아보기... ▲▼

V. 계약 이행



계약 이행

□ 선금

- 대상(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용역계약
 -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에 있지 아니한 경우
 -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 ※ 단, 원자재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 이행을 곤란한 경우는 제외
- 지급범위
 -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의무지급률 30% 이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지급 가능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선금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징구 가능)
 - ◆ 「단순노무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 선금지급의 예외 : 계약담당자는 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 지급조건
 -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 확보 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 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
 - ◆ 계약상대자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함
 - ◆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채권확보 방법: 선금지급 보증서(증권 또는 보증서) 징구
 - ◆ 보증기간: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함
 - ※ 이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 당초의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함

○ 선금 정산

- ◆ 선금은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 정산

$$\text{선금정산액} = \text{선금액} \times \frac{\text{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text{계약금액}}$$

○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 ◆ 선금신청서(사유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사용확약서(각서)
- ◆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완수금인 경우) 완수검사조서
- ◆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 채권이 양도되었으면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보험료 사후정산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입찰공고 시 안내사항: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
 -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 ◆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 ◆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근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 정산범위: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
 - ※ 입찰공고 등에 명시한 보험료를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이 없는 한 추가지급은 불가함
- 증빙서류: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 확인

VI. 학생 통학차량 안전

VI 학생 통학차량 안전

□ 운전자 안전수칙

○ 학생 통학차량 승차 시

- ◆ 사고 유형
 - 학생 통학차량에 타려고 건너오다 사고
 - 보도에서 차를 타려고 차도로 뛰어들다 사고
 - 학생 통학차량 승차 중에 학생 통학차량이 출발하여 넘어지는 사고
 - 문을 닫지 않은 채 급출발하면서 어린이가 문밖으로 떨어지는 사고
- ◆ 안전관리 방법
 - 학생 확인
 - 광각 실외후사경 등을 확인하여 차량 주위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
 - 학생이 무단횡단하지 않도록 지도
 - 학생 통학차량을 타려고 무단횡단하여 뛰어드는 학생이 많으므로, 학생 통학차량이 정차할 때에는 반대편 도로에 있던 어린이가 횡단보도로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지도
 - 학생 통학차량 승차 시에는 한 줄로 서서 안전하게 타도록 지도
 - 학생 통학차량 앞에서 뛰지 않도록 하고, 승차 시에는 한 줄로 서서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여 안전하게 앉도록 지도
 - 학생 승차 후에는 안전을 확인한 후 출발
 - 학생들이 학생 통학차량에 안전하게 승차한 후 차량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아서 안전띠를 착용한 것을 확인한 다음 서서히 출발

○ 학생 통학차량 운행 시

- ◆ 사고 유형
 - 급제동으로 생기는 사고
 - 창문 밖으로 손이나 머리 등 신체 일부를 내밀어서 일어나는 사고
 - 차 안에서 질식하는 사고
- ◆ 안전운행 방법
 -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
 - 학생 통학차량에 학생이 승차하면 안전띠를 잘 착용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급정거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소에 안전거리를 여유 있게 두는 운전 습관 유지
 - 안전띠는 골반뼈에 걸치도록 하고 띠가 목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확인



- 학생 통학차량 안에서 정숙한 분위기 유지
- 학생 통학차량 안에 학생을 혼자 두지 않도록 주의
 -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울 때에는 학생 혼자 학생 통학차량에 있지 않도록 점검하고, 운행 종료 후에는 하차하지 않은 학생이 있는지 차 안 맨 뒷좌석 까지 반드시 확인
- 진입로에서 후진 시 또는 차고지에서 나올 때는 학생 통학차량 주변에 건너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없는지 주의
- 스쿨존 안전 4대 수칙
 - 30km 이하 서행
 -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무조건 멈춰서고 주위를 자세히 살펴본 후 조금 늦게 출발
 - 급제동, 급출발하지 않기

○ 학생 통학차량 하차 시

- 사고 유형
 - 학생 통학차량에서 내리다가 발판에서 넘어지는 사고
 - 내린 후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자전거 등과 추돌하는 사고
 -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사고
 - 차문에 옷이나 가방이 끼인 사고
 - 학생 통학차량 앞으로 도로를 횡단하다 일어난 사고
- 안전관리 방법
 - 학생 통학차량에서 하차 시에는 안전을 확인한 후 차문을 열 것
 -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지 않는지 학생 통학차량 뒤쪽을 살피고 학생 통학차량을 완전히 정차한 후 차문 개방
 - 하차 시에는 반드시 동승보호자의 도움을 받으며 내리게 할 것
 - 어린이가 학생 통학차량에서 내릴 때에는 뛰어내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하차한 학생이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 학생이 반대편으로 길을 건널 경우 동승보호자가 함께 건너도록 함
 - 하차 후 출발 전에는 학생 통학차량 주위를 확인한 후 출발
 - 학생 통학차량에서 내린 학생이 앞으로 건너는 등 사각지대에 들 수 있고 옷이나 가방 등이 문에 끼일 수도 있으므로 출발 전 반드시 학생 통학차량 주위를 주의 깊게 살핌
 - 보이지 않는 부분은 동승보호자를 통해 확인하며 밖에서 나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운전석 창문을 약간 열고 확인
 - 동승보호자가 동승한 경우 외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 승하차를 확인

○ 교통사고 발생 시

- 학생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즉시 정차하거나,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로 자동차를 이동 정차
- 후속사고 방지를 위해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 설치하거나 차 뒤 트렁크를 열어 놓은 후 경찰 공무원에게 신속히 신고

○ 안전운전 세부수칙

- ‘급’이 붙는 운전 지양
 - 급출발, 급정차, 급가·감속, 급핸들조작 등 ‘급’이 붙는 운전은 승차 학생들에게 순간적인 충격을 주게 되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 학생들이 탑승 후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한 후 천천히 출발
 - 교통사고 원인 중 급출발, 급제동 등으로 발생한 사고가 많음
- 운행 중 중앙선 침범 금지
 - 운전자는 도로 중앙선의 우측부분으로 통행
 - 중앙선의 종류에는 황색실선 단선, 황색실선 복선, 황색 점선, 황색점선과 복선이 있으며, 황색실선 단선과 복선은 넘어가서는 안되는 선이고, 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넘어갔다가 되돌아와야 함을 의미
 - 차체의 일부라도 중앙선을 넘으면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 앞차가 좌측으로 진로를 바꾸거나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 마주 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
 - 뒤차가 자기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 앞차가 교차로나 건널목 등에서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을 때
 - 앞차가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할 때
 - 앞지르기 금지 장소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고갯마루 부근, 비탈길의 내리막길, 도로가 구부러진 곳
- 안전한 속도와 충분한 차간 거리 유지
 - 학생 통학차량은 다수의 학생들이 탑승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운행이 최우선
 - 도로별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하여 운행해야 하고, 운행 중 도로별 제한속도가 바뀔 때 자연스러운 가감속으로 학생들의 편안한 승차감 유지



- 앞차와는 충분한 차간거리를 유지하여 돌발 상황 시 앞차가 급정차하더라도 충분히 인지하고 제동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안전운전
 - 50km/h일 때는 앞차와 3초 정도의 여유를 두고 80km/h일 때는 4초 정도,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5초 이상의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
- 바람직한 제동방법
 - 충분한 차간거리를 두고 브레이크를 가볍게 밟아 브레이크 등을 2~3회 점멸시켜 후속 차량에게 신호를 보낸 후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
- 도로별 제한속도

구분	차로	제한속도
일반도로	편도 2차로 미만	최고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최고 80km/h 이내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이상	최고 100km/h 이내, 최저 50km/h
	편도 1차로	최고 80km/h 이내, 최저 50km/h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	최고 120km/h 이내, 최저 50km/h
	자동차 전용도로	최고 90km/h 이내, 최저 30km/h

- ♦ 주·정차 금지 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어린이 보호구역

- 6)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다목·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 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 기후 상황에 따른 운전 방법

구분	안전 운전 요령
빗길에서의 운전	○ 속도 줄이기 ○ 차간 거리 확보하기 - 차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길게 유지 ○ 낮에도 전조등 켜기 ○ 엔진브레이크 사용하기 - 비가 오면 브레이크라이닝과 드럼에 물기가 들어가 제동거리가 길어지며, 급제동 시 타이어 잠김 현상으로 차가 스핀 할 염려가 있고, 수막현상이 일어나 급제동 대신 여러번 나누어 밟아주는 펄핑 브레이크나 엔진브레이크를 사용 ○ 마모된 타이어 교체하기 - 수막현상으로 제동 시 미끄러지기 쉬움, 마모된 타이어를 점검하고 타이어 공기압은 평소보다 10% 이내로 높임 ○ 물웅덩이에서 속도 낮추기 -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를 지나다가 시동이 꺼지는 경우, 물이 최대한 적게 튀기도록 속도를 줄이고, 저단기어를 사용해 멈추지 않고 한 번에 통과하는 것이 요령이며, 물이 고여 있는 곳을 통과한 후에는 두 번 정도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 평상시 와이퍼 관리하기 ○ 배터리 점검하기 - 비가 올 때에는 평소와 비교해 에어컨이나 전조등, 와이퍼 등 전기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므로 갑작스럽게 배터리가 방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 ○ 침수 등 위험 예상 지역에는 주·정차 하지 않기
눈길에서의 운전	○ 안전거리 확보 및 서행 운전(방어운전) ○ 급제동 금지와 엔진 브레이크 활용 - 눈길에서의 급제동은 버스의 조향력을 잃기 쉬워 급제동을 삼가고, 가급적 감속 시에는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하며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 확보를 통해 서서히 멈추어 추돌사고 예방 -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에는 미리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서 상태를 확인하고 주위 차량에도 주의를 주는 것이 좋음 ○ 스노우 체인 및 스노우 타이어 사용 ○ 핸들 등의 과조작(급차선 변경, 급가속 등) 금지 - 핸들을 급격히 조작하는 급차선 변경은 평소 마른 노면에서의 운전 조건보다 어려움이 많아 매우 위험한 상황 유발 ○ 2단 출발(HOLD기능 사용) - 바닥이 미끄러운 눈길·빙판길에서는 기어 1단에서의 출발은 미끄러짐을 유발할 수 있어 수동변속기 차량은 2단 출발, 자동변속기 차량에서는 HOLD 기능을 활용해 2단과 3단에서의 운행을 통해 미끄러짐 예방 ○ 주간 전조등 점등 - 눈이 내리는 날에는 낮에도 맑은 날에 비해 어둡기 때문에 주간에도 전조등을 사용하여 방어운전



구분	안전 운전 요령
교차로에서의 운전	○ 교차로 통행방법 -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 그리고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 -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 -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하는 차가 있으면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됨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양보운전이 우선 - 긴급자동차 등 통행우선권이 있는 차에 양보 -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에 양보 -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에 양보 -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갈 경우에는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에 양보 -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직진 및 우회전 차에 양보 ○ 더욱 안전한 교차로 통행 - 녹색신호라 하더라도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다음 출발 - 녹색신호 뒤의 황색신호는 ‘녹색신호의 연장’이 아니라 ‘적색신호의 시작’을 의미 - 따라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이라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라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함 - 신호기를 설치한 교차로에 접근할 때는 신호가 잘 보이는 위치로 진입하고 대형차 바로 뒤에서는 신호를 볼 수 없으므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

◆ 운전 시 금지사항

구분	내용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을 할 수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없음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과로 등 몸이 정상인 아닐 때 운전 금지	○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못함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친환경 경제 운전(Eco-Driving)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 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함

구분	내용
급출발·급가속·급제동 금지	○ 일반적으로 급출발이나 급제동으로 소모되는 연료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20% 이상 많이 소비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 5분간 공회전을 하면 1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되고 이때 배출되는 매연은 대기오염의 원인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 유지	○ 타이어 공기압은 지면과 마찰 면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타이어의 공기압이 적정 공기압보다 10% 정도 부족하면 마찰 면적의 증가로 연료가 5~10% 더 소비
자동차 무게 가볍게 하기	○ 자동차의 무게는 연료 소모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불필요한 짐 10kg을 싣고 50km를 달리면 약 80cc의 연료가 소비됨
불필요한 브레이크 사용 자제 및 경제속도 유지	○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양보 운전을 실천한다면 불필요한 브레이크 사용을 줄일 수 있음(경제속도: 60~80km)



◆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준수사항

구분	내용
운전 중 피해 예방	○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운행 중 일시정지	○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한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맹인 안내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 표지로 지정한 곳
차마 통행 방해 금지	○ 도로에서 차량을 세워둔 채 시비, 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운전자 조치사항	○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히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운전 시 소음 발생 금지	○ 차량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 차량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기타	○ 차안에서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내버려 두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하여 운전자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차량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제외 - 지리 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 국가비상사태,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상황 안내 영상 - 운전을 할 때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 탑승자(학생) 안전수칙

○ 학생 통학차량 승차 시

- 학생 통학차량이 도착하기 5분 전에 지정된 승하차 장소에서 대기
- 학생 통학차량 주변에서 절대 뛰는 일이 없도록 함
- 학생 통학차량이 정차하는 지점에서는 차도에서 떨어져서 안전한 곳에서 대기
- 학생 통학차량에 탑승할 때는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기다리며, 학생 통학차량의 정지표지가 표시되고 적색불이 깜빡이는지 확인해야 함
- 학생 통학차량에 탈 때는 안전 손잡이를 잡고 타며 앞 사람을 밀지 않도록 함
- 자리에 앉으면 바로 안전띠를 매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동승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

○ 학생 통학차량 운행 중

- 학생 통학차량 운행 중 안전띠를 풀지 않음
- 차창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함
- 학생 통학차량 내부 또는 외부로 물건을 던지지 않도록 함
- 동승보호자 또는 운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함

○ 학생 통학차량 하차 시

- 학생 통학차량이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대기
- 학생 통학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안전띠를 해제
- 학생 통학차량에서 하차할 때는 앞에 앉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내림
- 학생 통학차량에서 하차할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을 밀어서는 안 됨
- 하차 후, 학생 통학차량 근처에서 물건을 떨어뜨렸을 경우 줍지 않고, 동승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

□ 동승보호자 안전수칙

○ 학생 통학차량 승차 시

- 학생 통학차량이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지한 것을 확인
- 학생 통학차량이 안전하게 정차하면 학생 통학차량에서 하차하여 학생을 차례대로 승차시킴
- 학생이 안전띠를 스스로 맬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제공
- 안전띠가 꼬여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고리를 끼움
- 모든 학생이 좌석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확인하고, 학생 통학차량 주변에 다른 학생이 있는지 다시 확인
- 학생이 모두 승차하면 운전자에게 알려 서서히 출발하도록 함

- 학생 통학차량 운행 중
 - ◆ 학생이 안전띠를 풀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
 - ◆ 학생이 차창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지도
- 학생 통학차량 하차 시
 - ◆ 학생 통학차량이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지한 것을 확인
 - ◆ 오토바이, 자전거가 오는지 뒤쪽을 살피고 학생보다 먼저 하차
 - ◆ 학생을 한 명씩 안전하게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
 - ◆ 하차한 학생이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
 - ◆ 운행 종료 후에는 학생 통학차량 안에 학생이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
 - ◆ 학생 통학차량 앞·뒤, 옆에 넘어지거나 횡단하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
 - ◆ 학생이 모두 하차하면 운전자에게 알려 복귀하도록 함
- 교통사고 발생 시
 - ◆ 부상당한 학생이 있는지 신속히 파악하고 응급조치 실시
 - ◆ 학생을 안전하게 하차시키고 인도나 도로 밖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킴
 - ◆ 경찰공무원이나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고 인원 파악 철저
 - ◆ 학교에 즉시 알림
 - ◆ 사고 현장이나 후송 차량에 학생만 남는 일이 없도록 함

Ⅶ. 부록 - 각종 서식





【각종 서식】

□ 학생 통학차량 등·하교 이용학생 명단	111
□ 학생 통학차량 운행 확인서	112
□ 학생 통학차량 운행일지	113
□ 학생 통학차량 일일 자체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114
□ 학생 통학차량 월 자체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115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116
□ 차량 정수배정 신청서	117
□ 차량 등록 또는 말소 등록 보고서	118
□ 차량 교체승인 신청서	119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서	120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122
□ 공용차량 관리대장	124
□ 유류 수불대장	125
□ 차량 정비대장	126
□ 운전원 근무수칙	127
□ 동승보호자 근무수칙	128

별지1

학생 통학차량 등·하교 이용학생 명단

학생 통학차량 등·하교 이용학생 명단

○○학교

연번	학년/반	성명	성별	승하차 장소	연락처(핸드폰)			비고
					학생	보호자	담당교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작성요령

1. 코스에는 등교 시 1·2코스, 하교 시 1·2코스 이용학생 명단을 별도로 기재
2. 학생명단 작성 시 각 코스별로 승·하차 순으로 이용학생을 순차적으로 기재



별지2

학생 통학차량 운행 확인서

학생 통학차량 운행 확인서

- ◎ 업 체 명 : ○○고속관광
 ◎ 차량번호 :
 ◎ 운행기간 : 0000.00.00. ~ 0000.00.00.
 ◎ 운행일수 : 일

구 분	기준일수	운행일수		
		전월까지 누계	당월	합계
등·하교				
계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학생 통학차량 운행일지 1부.

0000. . .

제출자 직 : 성명 : (인)

○○고속관광(직인)

○○학교장 귀하

확 인	담당자	행정실장	교장

별지3

학생 통학차량 운행일지

00학교 학생 통학차량 운행일지

예시이므로 유치원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사용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안전요원 성명(등교)		안전요원 성명(하교)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운행상황		용무	출발 시간		종료 시간		탑승 인원	비고
등·하교	등교	유아수송					명	
	하교(1)	유아수송					명	
	하교(2)	유아수송					명	

특이사항 기록

위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요일)

○○학교장 귀하



별지4

학생 통학차량 일일 자체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학생 통학차량 일일 자체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차량번호: ☐ 확인자: (서명)

구분	점검 내용	점검결과	비고
출발 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되었는가?		
	어린이(학생) 보호 표지를 학생 통학차량 앞면 창유리와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에 부착하고 있는가?		
	학생 통학차량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학생 통학차량 내 비상연락망이 게시되어 있는가?		
	학생 통학차량 내 급급상자가 비치되어 있는가?		
	학생 통학차량 내 날카로운 곳 또는 위험한 물건(인화물질 등)이 없는가?		
	차량용 소화기가 고정 설치되어 있고, 소화기 압력은 적당한가?		
	승하차보호기(정지표시장치) 및 승강구(보조발판)가 정상 작동하는가?		
	양쪽 타이어의 마모 상태와 타이어 공기압 적정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했는가?		
운행 중	운행노선 및 시간표, 정류장 별 승·하차 어린이 명단을 소지하고 있는가?		
	운행노선과 도착시간 등이 운전자와 학생이 무리하지 않게 여유 있게 설정되어 승하차 시 혼란이나 학부모 민원은 없는가?		
	학생이 자리에 앉는 동안 좌석 안전띠 착용 등 보호 조치를 적절히 하고 있는가?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운전자가 운행 시 저속 주행을 하였는가?		
운행 완료 후	지정된 하차 장소에서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고 있는가?		
	동승보호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가 하차 후 차량 내 모든 좌석을 직접 돌려보며 하차안전장치 작동을 종료하였는가?		
	일일 차량 운행일지를 성실히 작성하고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동승보호자는 차량탑승 학생 중 결석자를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전달하였는가?		
	각종 전기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점검결과를 O, X로 표시하고 “X” 항목에 대한 보완조치 후 보관

※ 점검자는 기본사항-통학차량담당자, 차량점검-운전자, 차량승하차지도점검-통학차량실무사 또는 동승보호자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

별지5

학생 통학차량 월 자체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학생 통학차량 __월 자체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차량번호: ☐ 확인자: (서명)

구분	점검 내용	점검결과
운 영 자	기본 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증명서 반납, 차량 계약사항, 보험내용, 교육일 갱신 등이 있을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수정하여 현행화하고 있는가?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일일 자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확인 및 조치하고 있는가?
		신규 차량 구입 및 임차계약 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매뉴얼을 준수하여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가?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규 및 정기 안전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고 있는가?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운영자)을 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두었는가?
		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수칙(매뉴얼)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실시 횟수 기재)
		운행 시 반드시 교직원 등 학생을 보호할 동승보호자를 탑승시켜 지도 하고 있는가?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장소가 적절하게 지정되어 있는가?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장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노면표시와 안전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가?
	승·하차 지도	방문자나 운영기관 관계자의 주차 장소는 어린이통학버스 주차장소와 따로 지정되어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운 전 자	사고 발생 처리	사무실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주차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이 설치되어 잘 작동되고 있는가?
		사고발생 시 보고체계 및 조치사항을 숙지하고 신속 정확히 보고하고 있는가?
		학교안전책임관(안전담당교사)을 지정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조직을 일원화하고 있는가?
	운전자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규 및 정기 안전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고, 확인증을 차량 내에 비치하고 있는가?
		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수칙(매뉴얼)을 모든 차량의 내부에 비치하고 역할별 임무를 숙지하고 있는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및 일일 안전점검 일지를 수시로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보고하는가?
	운전자 / 동승 보호자	모든 동승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는가?
		교사는 통학버스 탑승 유아의 출결여부 및 결석사유 중 출결 사항을 매일 작성하고 보호자에게 확인하는가?
	교사	

※ 점검결과를 O, X로 표시하고 “X” 항목에 대한 보완조치 후 보관



별지6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2020. 11. 27.>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운행연월 20 . .		
성명 (운영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차종(차명)					교육시설명							
차량등록번호					정원			제작연도				
좌석 안전띠 착용	월일											
	여부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	월일											
	여부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53조7항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합니다)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7 차량 정수배정 신청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6.17.>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신청서

(기 관 명)

수신자 ()

(경 유)

제 목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신청

1. 관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 제7조
2. 차량의 정수배정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정수배정 신청내역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사용 부서	⑦ 요청 정수	⑧ 정수 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	⑨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 예산액	⑩ 차량등록 예정관서 명	⑪ 비고
			()							

※ 규칙 제7조: 임시차량의 정수배정에 관한 규칙임

※ 기재요령: “④ 차명” 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배정 신청설명서(소요예산 및 운전원 확보방안 포함) 1부. 끝.

발 신 명 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8 차량 등록 또는 말소 등록 보고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5.6.17.>

○ ○ ○ 학 교

수신자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과장)

(경유)

제목 차량 등록(말소등록) 보고

1. 관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5조(차량의 등록절차)
2. 차량 등록(말소등록)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등록차량 내역

① 승인번호 및 일자	② 차량소속 기 관	③ 차 명	④ 연 식	⑤ 용 도	⑥ 차량 등록번호	⑦ 등록 또는 등록말소일자	⑧ 비 고
		()					

※ 기재요령: “③ 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붙임 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1부.
2. 자동차등록원부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1부. 끝.

○ ○ ○ 학 교 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9 차량 교체승인 신청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용 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6.17.>

차량 교체승인 신청서

(기 관 명)

수신자 ()

(경유)

제목 차량 교체승인 신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 차량

① 차량소속 기 관	② 차 형	③ 차 명	④ 연 식	⑤ 승인번호 및 일자	⑥ 사 용 부 서	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⑧ 차량 등록번호	⑨ 비고
		()						

2. 교체할 차량

① 차량소속 기 관	② 차 형	③ 차 명	④ 연 식	⑤ 사 용 부 서	⑥ 취득계획구분(신 규구입 또는 이체)	⑦ 차량구입비 및 운 영비 책정예산액	⑧ 차량등록 예정관서명	⑨ 비고
		()						

※ 기재요령: “③ 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붙임 1. 차량 교체 설명서 및 증빙서류 1부.
2. 차량파손사고에 대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 1부.
3. 차량수리비에 대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 확인서(제10조제2항제2호의 경우) 1부. 끝.

발 신 명 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10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12. 31.>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차종(차명)	형식	
	등록번호	정원	제작연도
보험 (공제) 가입	가입자	가입회사	
	배상한도	대인	대물
차의 운행	운행 구간		
	운행 횟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1.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2. 학교(학원) 등기(등록)·인가·신고서 사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등록증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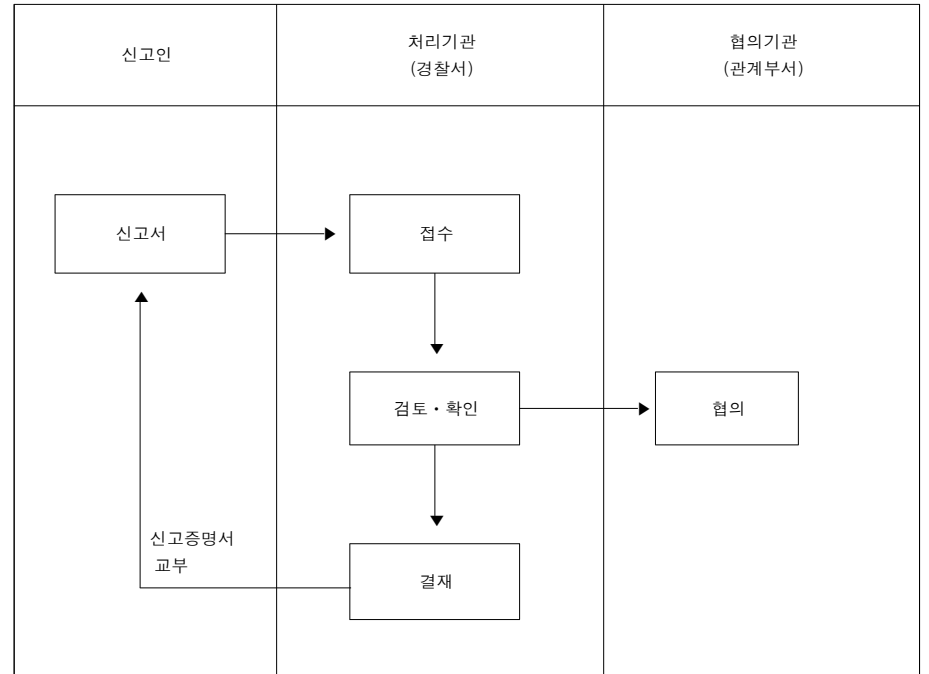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11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8. 4. 25.>

(앞쪽)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지정번호 연도-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자동차종류		형 식				
차의 등록번호		정 원		제작연도		
보험(공제) 가입회사		배상한도	대인	대물		
차의 운행구간						
차의 운행횟수						
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130mm×120mm(보존용지(1종) 70g/㎡)

유 의 사 항

1.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언제나 이 신고증명서를 지녀야 합니다.
2. 이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시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신고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뒤쪽)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5.6.17.>

공용차량 관리대장

기관(학교)명 : ○○○학교

등록번호	승인 구분	승인문서번호	재원	용도	차종	차형	차명	연식	배기량	차량 번호	취득 구분	비고
등 록 일		승인 번호 (승인일자)						정원	중량			

※ ○ 기관(학교)별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작성
○ 형서식으로 작성
○ 차량교체,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차량교환 등의 경우 종전 차량 및 종전 사용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5.6.17.>

유류 수불대장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동승보호자 근무수칙

- 동승보호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탑승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차량 이용 시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 동승보호자는 근무 중에 단정한 복장과 품위 있는 태도로 학생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한다.
- 동승보호자는 근무시간 중 항상 지정된 대기실에서 운행 대기하여야 하며,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기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승보호자는 승·하차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 차량 출발 전 학생 명단을 확인하여 미 탑승 학생의 탑승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차량 운행 중에 학생들이 좌석을 이탈한 경우에는 운행을 잠시 중단하도록 운전원에게 요청한다.
 - 차량 운행 완료 후 반드시 미 하차 학생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동승보호자는 근무 시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음주 행위, 운행 중 흡연·식음행위 및 불필요한 잡담행위
 - 학교에 사전 통보 없이(3일전) 타인에게 탑승을 대행하게 하는 행위
 - 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거나 탑승업무 이외의 업무로 차량을 무단이탈하는 행위
 - 학생에게 폭력, 폭언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차량안전에 해하는 행위
 - 학생 이외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수수 행위
 - 업무 중 난폭한 행위를 하는 행위
- 동승보호자는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전화 또는 구두)하여야 한다.
- 동승보호자는 운행 중 차내 대화를 통하여 지득한 내용에 대해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승보호자는 제반 근무상황에 대하여 학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학생 통학차량 운영 업무매뉴얼



총괄

엄신옥 서기관 | 교육복지과장

기획

황윤구 사무관 | 학생통학·직원복지담당

주관

강민관 교육행정6급 | 학생통학·직원복지담당

제1분과 [운영 및 관리 분야]

김용우 교육행정6급 | 갈매초등학교

임효진 교육행정6급 | 양주도담학교

이승현 교육행정6급 | 시흥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박현정 교육행정7급 | 옥정중학교

임옥빈 교육행정8급 |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제2분과 [계약 및 인력관리 분야]

김선영 교육행정6급 | 용인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이수현 교육행정6급 |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조영래 교육행정6급 | 가산초등학교

신명선 교육행정6급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진세희 교육행정7급 | 해솔초등학교

제3분과 [운영지원·자문]

한은경 교육행정6급 | 학생통학·직원복지담당

이용환 교육행정7급 |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과

이수빈 교육행정7급 | 학생통학·직원복지담당

장희승 교육행정8급 | 학생통학·직원복지담당